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2011년 5월 17일(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주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목차

세션 1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와 인권
1	대테러리즘에 따른 아시아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침해 (파하드 마즈하르, UBINIG, 방글라데시)
12	대테러리즘에 따른 종교와 종족 분쟁 그리고 군사주의 (퐁키 인다르티, Imparsial, 인도네시아)
세션 2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I
15	아프가니스탄 (파잘 가니 카카르, 아프간 여성전문교육원)
22	버마 (소웅, 버마민주주의 포럼)
28	네팔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책임성 감시 위원회)
37	파키스탄 (I. A. 레만, 국가인권위원회)
43	스리랑카 (B. 스칸타쿠마르, 법치사회기금)
세션 3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II
53	방글라데시 (아딜라 라만 칸, Odhikar)
61	인도네시아 (피트리 빈탕 티무르, 국가안보와 평화학 연구소)
70	말레이시아 (옹진칭, SUARAM)
75	필리핀 (마리아 카르멘 루손 개트메이탄, 인터내셔널 다이얼로그 이니셔티브)
83	태국 (아차폰 니미쿨폰, 평화를 위한 정의재단)
세션 4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III
87	중국 (패트릭 푼, 중국인권변호단체)
92	인도 (바블루 로이통밤, 인권긴급행동)
100	싱가포르 (시나판 사미도라이, 싱크센터)
106	한국 (이태호, 참여연대)
부 록	참가자 리스트

* 아시아참가자들의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임을 밝힙니다.

환영사

2011 광주아시아포럼 행사에 참여하신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개막식과 리셉션에 이어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 광주아시아포럼을 통해 출범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의 첫 번째 연대 행사인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5·18기념재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1 광주아시아포럼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포럼 행사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월 광주는 지난 31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경험과 국제적인 오월정신의 연대와 교류 활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출범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을 구체화한 첫 발걸음입니다. 5개국 6개 단체가 뜻을 함께 하여 출범한 네트워크 모임은 오월정신을 아시아의 시민사회와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11테러가 발생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남겨 주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민중이 테러와의 전쟁이란 미명하에 진행된 전쟁으로 희생되었으며 결코 치유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권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9·11테러와 같은 비극의 원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진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이번 광주아시아포럼의 워크숍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실무자들과 자

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2011 광주아시아포럼 행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와 18일까지 이어질 기념식과 광주인권상 시상식 행사까지 참여 하시면서 뜻 깊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

개회사

올해 2011년은 알카에다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영토를 공격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공격으로 세계무역센터에서 3천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이, 세상은 인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 주도로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은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이 반드시 테러리즘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알카에다 조직으로부터 더 많은 보복성 공격이 예상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수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국가들은 테러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억압적 행위와 기존 법들을 정당화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인권과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용의자들을 장기간 구금하고, 그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며, 마음대로 감청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대폭적인 권한이 정부에 부여되었습니다.

자기결정권 운동은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로 간주되어 불법화되고, 반체제인사들은 테러리스트로 낙인이 찍혀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며,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합법적인 활동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인종 프로파일링이 만연해지고, 전화선과 이메일, 우편물은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감시와 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은,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이라 여겨지는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특히 아시아에서 극심한 퇴보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는 이러한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지난 10년간, 사람의 안전보다 국가의 안보를 중심에 두는 대테러 법과 조치들에 저항해왔습니다.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애드보커시활동이 시민사회운동에 의해 착수되었습니다.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

에게 있어서, 9.11 사태 이후 각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인권을 침해하는 대테러 법과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911 사태 10주년을 맞는 지금은 아시아에서 대테러 조치 및 입법이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때입니다. 또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테러법과 국가보안법에 대항하는 싸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와 인권운동이 자신의 전략과 캠페인, 애드보커시활동을 재점검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워크숍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 보다 강한 연대와 신념, 협력으로 결속하고, 궁극적으로는, 테러리즘의 근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천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최측을 대신하여, 이번 워크숍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518기념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얍 스웨생 (포럼 아시아, 태국)

프로그램

2011년 5월 17일(화)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주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DMA)	
09:00-09:10	환영사 김준태(518기념재단 이사장, 한국) 개회사 Mr. Yap Swee Seng(FORUM-ASIA, 태국)
09:10-10:30	세션 1.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자: 양영미 (참여연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테러리즘에 따른 아시아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침해 Mr. Farhad Mazhar(Unnayan Bikalper Nitinirdharoni Gobeshona, 방글라데시) - 대테러리즘에 따른 종교와 종족 분쟁 그리고 군사주의 Ms. Poengky Indarti(Imparsial, 인도네시아)
10:30-10:40	휴식시간
10:40-12:30	세션 2.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1 사회자: Mr. Adilur Rahman Khan(Odhikar, 방글라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Mr. Fazal Ghani Kakar(Afghan Women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e, 아프가니스탄) - 버마 Mr. Soe Aung(Forum for Democracy in Burma, 버마) - 네팔 Mr. Govinda Prasad Sharma Koirala(Accountability Watch Committee, 네팔) - 파키스탄 Mr. I. A. Rehman(Human Right Commission of Pakistan, 파키스탄) - 스리랑카 Mr. B. Skanthakumar(Law Society Trust, 스리랑카)
12:30-13:30	점심

13:30-15:10	<p>세션 3.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II 사회자: Mr.B.Skanthakumar(Law&Society, 스리랑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 Mr. Adilur Rahman Khan(Odhikar,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Ms. Fitri Bintang Timur(Institute for Defense Security and Peace Studies,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Mr. Ong Jin Cheng(SUARAM, 말레이시아) - 필리핀 Ms. Maria Carmen Lauzon-Gatmaytan(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필리핀) - 태국 Ms. Arachapornt Nimitkulporn(Justice for Peace Foundation, 태국)
15:10-16:30	<p>세션 4.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III 사회자: Ms. Poengky Indarti(Imparsial, 인도네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Mr. Patrick Poony(China Human Rights Lawyers Concern Group, 홍콩) - 인도 Mr. Babloo Loitongbam(Human Rights Alert, 인도) - 싱가포르 Mr. Sinapan Samydorai(Think Centre, 싱가포르) - 한국 이태호(참여연대, 한국)
16:30-16:40	휴식 시간
16:40-18:20	<p>세션 5. 시민사회 대응 전략회의 사회자: Mr. Yap Swee Seng(FORUM-ASIA, 태국), 이태호(참여연대, 한국)</p>
18:20-18:30	폐회사 이태호 (참여연대, 한국)

대테러리즘에 따른 아시아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침해 ; 아시아 지역의 반테러 법에 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UBINIG, 방글라데시)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펜타곤에 대한 공격이 있던 저녁, 부시 대통령은 대 국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동료 시민들, 우리 삶의 방식, 우리의 자유가 계획된, 치명적인 일련의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은 비행기에서 사무실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비서, 사업가, 여성, 군대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 엄마, 아빠, 친구, 이웃이 바로 그들입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악의 손에, 비열한 테러행위에 의해 느닷없이 사라졌습니다. 건물로 돌진한 비행기, 화재,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지는 광경은 우리에게 불신과 끔찍한 슬픔, 조용하지만 굽힐 수 없는 분노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대량학살 행위는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어 혼돈에 빠뜨리고 위축시키고자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굳건합니다.”¹⁾

다음날,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가안보팀과의 회의를 방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신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감행된 계획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은 테러행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뭉쳐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성질의 행위입니다.”

1) [http://articles.cnn.com/2001-09-11/us/bush.speech.text_1_attacks-deadly-terrorist-acts-despicable-acts?](http://articles.cnn.com/2001-09-11/us/bush.speech.text_1_attacks-deadly-terrorist-acts-despicable-acts?_s=PM:US)

_s=PM:US. (2011년 4월 20일 열람).

이후 부시 행정부와 미국 언론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문구를 선택했다. 다수의 논평자들이 테러에 대한 조직적 폭력 전개가 전쟁²⁾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각국 정부는 특히 식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테러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에 대해, 전쟁 대신 치안 활동(police a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독일의 적군파(Red Army Faction:Baader-Meinhof),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IRA), 스페인의 바스크 조국과 자유(Basque Homeland and Freedom: Euskadi Ta Askatasuna:ETA),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Red Brigade) 등을 상대로 싸우면서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대응을 '안보 조치security measures' 혹은 '치안 활동'으로 묘사했다. '전쟁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명백히 9·11 사태 이후의 세계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 이 변화는 여러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법인(혹은 법인격자 legal person)이라는 관점에서 이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 양 측면 모두에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테러법의 기본적인 특징은 피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부인되며, 따라서 한 '사람person'으로서 개인이 가진 법적 지위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따라서 안보기관의 구금 하에 혹은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문당하거나 살해될 수 있는 '벌거벗은 생명' 즉,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로 격하된다.

둘째, 전 지구적 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이 띠고 있는 특징들 중 우리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라는 도전이 두 배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하겠다. 끝으로, 아시아 각국이 채택한 대테러법의 공통점들을 몇 가지 논의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연설에서, 미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되었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압도적 권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을 '희생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연설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전 지구적 비상사태, '전 지구적 내전' 혹은 전 지구적 '예외상태 state of exception'의 선포이다. 2001년 10월 26일, 미국 상원은 애국법(Patriotic Act)을 통과

2) 다음 논문 참조, On September 11 2001: Philosophy and the "War against Terrorism" by Alain Badiou in POLEMICS. Verso 2006. New York.

시켰다. 이 법으로 법무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활동의 혐의가 있는 모든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7일 안에 해당 외국인은 석방되거나 이민법 위반 혹은 다른 형사 범죄로 기소되어야만 한다. 부시 대통령의 명령은 상당히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철저히 제거하였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명명할 수 없고 분류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제네바 협정이 규정하는 전쟁포로의 자격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피기소인의 자격조차도 갖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피구금자'이다. 이들은 순수한 실정법(pure defacto rule)의 대상이 되고, 이들의 구금은 시간적 의미에서 무한할 뿐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도 무한하다. 법과 사법적 감독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나치 캠프에서 유대인들이 처했던 법적 상황이다. 이들은 시민권과 함께 유대인으로서의 법적 정체성을 모두 상실했던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효과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준 관타나모(Guantanamo)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에게 제서 보듯이, 별거벗은 사람(bare life^{역사 주} 법적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은 최대치의 비결정성(indeterminance)에 도달한다."³⁾

둘째, 테러와의 전쟁은 한 패권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가 아닌, 얼굴 없는 전 지구적 비국가적 행위자에게 선포된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대전(world war)'이 아니라 '전 지구적(global)' 전쟁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 외교와 국제법과 법적 도덕적 인권 체제가 테러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그러하다. 이 전쟁이 언제 완전히 끝이 날지, 승리나 패배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누가 승리나 패배의 조건을 결정할지를 알 길이 없다. 한마디로, 테러와의 전쟁은 무한 전쟁이다.

셋째, 테러와의 전쟁은 공포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포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와 국가 간의 신뢰와 이해를 파괴하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폭력과 분쟁을 낳는다. 공포는 이성적인 분석을 약화시킨다. '다른 이들'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하는 적으로 등장한다. 우리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비난하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한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포는 서로 소통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게 할 수도 있는 이해와 분석의 가능성을 전부 포기한다. 정보화시대에 공포는 불소통이고 비정보이며, 그

3) 다음 논문 참조: 'State of Exception' by Giorgio Agambe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Page 4.

결과 허위정보를 야기한다.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군사력이 강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패권 국가인 미국은 자신들의 존재의 표시로 전쟁에 특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인권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이 '전쟁'의 수준과 강도, 그리고 '우리'와 '그들'로 친구와 적을 나누는 틀에 의해 결정되는 운명에 놓여 있게 되었다. '테러리스트'는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어떤 법적 지위도 가질 수 없다.

2001년 9·11 이후 등장한 전 지구적 정치·사법 질서는 아시아 각국 내의 정치적·사법적 환경을 대체로 구성하였고, 이들 나라의 인권활동가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는 반테러 법 제정을 위한 맥락을 제공했다.

지구화와 테러와의 전쟁

지구화는 개인의 무한한 탐욕의 문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기업의 이익 창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된 세계를 만들어왔다.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 문명, 그리고 생명 공정의 공정을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공격과 함께, 지구화는 환경적 생태적 파괴를 가속화해왔다. 많은 관찰자들은 지구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강화된 지구화는 국내 경제 및 자본과 재화의 이동을 위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전 지구적 시장과의 관계를 변환시켰음은 물론, 주권, 국가, 성, 계급과 그 역할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법과 법체계 역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지구화 시대의 놀라운 특징은 어떤 나라도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차단된 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이 만들어 내는 모순과 적대감이 인권활동(human rights activism)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고 형성한다.

전 지구적인 정치적 사법적 질서의 변화는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의 변화와 함께 일어났다. 우리는 세계 질서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거대한 전환을 경험했다. 세계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통합과 침몰을 겪고 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 미국과 유럽의 미 동맹국들은 경쟁 세력에

대해 확고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후 미국 모델에 따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해서 독재를 휘두를 조건이 만들어졌고, 또한 이는 널리 받아들여졌다. 세계는 단일 초강대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극 체제(unipolar world) 하의 경제비전과 이의 실행과정은 필연적으로 지구화를 가져왔다.

이 체제는 본질적으로 불균형하며 강압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보다 시장을 우선시 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주장하기를, 시장은 부와 자원을 분배를 포함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주요 기제이므로, 안보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할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전체적인 기반이 안보 문제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떠한 국지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만연한 위협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위협은 이제 더 이상 한 국가의 국경 밖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내에서도 발생한다고들 말한다. 사회의 내적변화, 기술변화, 인구성장, 특히 빈곤, 경제적 불안정, 실업, 도시화, 환경훼손,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경쟁,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들도 즉각 국가의 안보 위협을 구성하는 중대한 불안정화 요소로 간주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 환경은 테러에 대한 전 지구적 전쟁을 '테러리스트'에 대한 국내 전쟁으로 내부화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전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은 쉽게 일치되었다. 미국의 강압적 안보 기구들은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정비되었다. 권위주의와 독재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국가에 의해 안보위협으로 묘사된다. 안보기관의 개입과 관련된 법과 규정이 변경되면서 순수한 민주적·정치적 저항과 범죄성 폭력 사이의 구분이 흐려졌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정의를 확대하여 어떤 이의제기나 정치적 저항까지도 테러로 규정하기 쉬워졌다.

말할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neoliberal globalism)라는 의제는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모두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은 자국민들을 길들이고 착취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강제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해왔다. 반테러 법(anti-terrorism law)을 포함한 '대테러리스트(counter-terrorist)' 조치는 반대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이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형사법도 '테러리즘'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테러에 대한 전 지구적 전쟁은 반대자 처단하고자 하는

국내전으로 내부화되었다. 이는 부정과 압제에 저항하는 민중의 힘을 막으려 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곳에서나 민주주의는 지구적 질서와 이러한 정부들과 모두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통치기술이라는 것은 안보와 테러리즘을 다룬다는 구실 하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다루는 기술이 되었다. 대테러리즘은 국가의 민주적 행정 체계를 대체하였다.

인권

인권은 이제 보편적이며, 거의 모든 국가가 인권의 기본 원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인권활동가가 일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더 어렵고 도전적이다. 인권의 임무는 점점 더 국가에 대한 희생자로서의 개인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바로 범법자, 즉 국가이다. 협약, 선언, 그리고 소위 희생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이 붙은 법들은 실제로는 국가를 강화시킨다. 국가는 인권을 이행하기 위한 법의 힘을 획득한다. 오직 국가만이 법으로서의 규범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환경 속에서 대테러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각 국가가 겪은 변화를 고려할 때, 인권 이행을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환상이다.

또한 이제 '외부적 개입'은 종종 인도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이것은 언제나 선별적이며 정치적인 동기를 갖는다. 오늘날과 같은 군산복합체의 시대에는 어떤 나라도 단지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군사적 자원을 동원하지는 않는다. 테러와의 전쟁 역시 적을 일체의 법적 실체가 결여된 '벌거벗은 생명'으로 간주하기에 잔혹한 폭력을 지지한다.

전쟁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그들이 때때로 군 지휘부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을 합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무자비한 폭력'을 '비례하지 않게' 명령하는 지휘관은 드물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사법적 명령 또한 그러한 폭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 시대를 맞아 변화되었다.

역설적인 상황은 인권옹호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인권활동가들이 그들의 다양한 수준의 사회와 정치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인도주의적이라는 이유

로 정당화되는 국가의 “개입”에 대항함은 물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경우 그 어려움은 훨씬 복잡적이다.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가 -아시아 내의 모든 국가들이 해당 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권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역설의 그늘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대자본의 편을 들면서, 인민 대 기업의 대립 관계가 적대감,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국가는 점점 더 엘리트들과 기업을 대리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 기관으로 축소되어 왔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주권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인민 의지에 의한 정치-사회적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배적 사회 기구로 시장이 격상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가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달라진 전 지구적 사법 및 정치 질서라는 현실에 기인하여 강압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 반테러 법의 공통점

아시아에서, 몇몇 국가들은 테러를 겨냥한 법과 정책을 논의 중이거나 이미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과 정책은 훈련이나 서방으로부터 들여온 고문장비와 총기류를 군대와 법 집행 기관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같은 ‘안보 지원security assistance’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정한 법과 정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법과 정책들이 국제 경제, 정치 및 사법 질서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정부와 지역적-국제적 기구 및 결사체들의 주요한 업무가 그러한 호전적인 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원인을 해소하는 대신 대테러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패러다임의 지구화에 대응하여, 반테러 법과 정책과 같은 안보 증후군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들이 되었다.

반테러 법과 정책은 국경을 넘고, 국내법과 지역의 법률, 국제법 간의 경계를 넘는다. 행정, 헌법, 형사, 이민, 군사법, 전쟁법 등과 같은 전통적 학문의 경계 또한 가로지른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법과 정책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적 문화의 심장을 공격하고, 시민적 자유가, 심지어는 가장 튼튼한 유럽의 민주주의에서조차, 반테

러 법과 정책을 향한 강박적이고 불균형한 접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아시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각국 정부에게 인권운동가, 인권옹호자, 변호사, 판사, 언론인 등으로부터 강력히 비판받고 있는 반테러 법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행되고 있는 반테러 법은 표현과 사상, 이동, 결사 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반테러 법안들이 너무 광범위하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자유권 수호자, 자기결정권 운동가, 종교단체, 테러리스트 용의자,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나 인권옹호자, 노조활동가 등과 같은 법을 준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 인권기준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법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유권들을 대단히 가혹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

보통 반테러 법안들은 국가로 하여금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국가의 일반 법률을 무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정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특히 잠재적으로 종교단체와 특정 정치단체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아시아 각국의 공포된 혹은 제안된 법 모두에서 '테러'의 정의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부정확하며, 통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그것이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이념적 의도에서 그랬다면, 그 법은 어떤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반테러 법률에 포함될 수 있는 조치들에는 태국과 파키스탄의 예방 구금(재판 없는 구금),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통제 명령(control orders),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영장 없는 수색, 그리고 신속하고 장기간에 걸친 구금과 같은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해당된다. 남아시아 지역의 법에서 커다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첩보 정보가 사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제안되고 통과된 법률 중 다수가 테러 단체로 간주되는 조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와 같이, 어떤 조항들은 테러 단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에게 사형 선고⁴⁾를 허용하고, 용의자를 장기간 기소 없이 혹은 변호사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 정부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안보 기관들은 민주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과 테러, 즉 폭력 선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반테러 법은 이

4) 이것은 국제협약 및 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다.

러한 구분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토론과 저항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반테러 법은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아시아인들에게 중요한 시민정치적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계속해서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반테러 법과 정책과 관련하여 성장하고 있는 비교학과 국제학 분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 헌법, 이민법, 사생활법, 해양법, 항공법, 재정법 등을 포함하여 반테러 법과 정책의 특정 측면에 대해 비교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비판적 시각을 통해 아시아의 특정 국가와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모든 법률은 그 어떤 공적인 협의나 참여 없이 공포되었다.
-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개인이 표적이 되고 기소될 수 있다.
- 그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하며 애매모호하여,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모든 이들을 체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합법적 시위까지도 정부에 의해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따라서 테러로 간주될 수도 있다.
- 이 법률에 따른 범죄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 동기보다는 의도를 강조하는데, 이는 전통적 형사법의 기초이다.
- 자기결정권 증진시키는 데 있어 자기 방어를 위한 국제인도법 상의 법적 권리를 훼손한다.
- 실제 이러한 위반행위의 다수는 폭력 행위를 행사할 그 어떤 의도와도 거리가 먼 행동을 범죄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 단순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에 주어진 폭넓은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권한과 예방구금 권한을 법 집행기관에게 부여한다.
- 개인을 특정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집행기관에 부여한다. 이 기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테러 활동을 재정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조직은 금지할 수 있고, 금지된 조직을 지지하는 발언을 범죄시할 수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발언이 범죄 행위나 테러 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중대한 요소들이 아시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생겼다. 불행하게도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정책들과 제도적 장치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하위 계층의 급속한 증가가 초래한 결과를 따라잡지 못했고, 그들과 그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도 불충분한 상태이다.

인도에서는 가혹한 군특별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of 1958)이 이제 카시미르와 북동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물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숲에 대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조우 살인(encounter killings)이 소위 마오주의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명목 하에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서구'의 무인항공기의 폭격과 함께,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상은 이미 '남아시아 대테러 전담반'을 제안하였다. 2009년 반테러 법 도입 이후 언론인, 인권옹호자, 정치 활동가들이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있다. 이 조잡한 법에 따라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고 기소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빠따니 지역에서 자결권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고, 국가의 후원 하에 살인과 고문, 구금을 자행하여 전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임무에 착수한 몇몇 인권운동가들 역시 실종을 포함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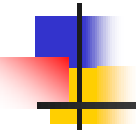
필리핀에서는 북쪽의 좌파 게릴라 운동과 남쪽의 자결권 운동이 똑같이 국가의 탄압에 직면하였다. 자결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남부 모로(Southern Moro) 운동은 미군의 지원을 받은 아로요 정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점령과 저항의 두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맺음말

이 글은 아시아 지역의 반테러 법에 대해 철저히 고찰할 뿐만 아니라 이 법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개념적 문제 몇 가지를 강조하였다. 반테러 법에 의한 개인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환은 아시아에서 시민권, 인권이 훼손되고 있는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반테러 담론과 법을 지역적 혹은 지구적 행위자들의 잔인하고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이 모든 가능성과 광범위한 충동에 직면하여, 실제 현실을 풀어 놓는 것은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개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해체되는지, 그리고 인간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사법 질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 또한 열려 있다. 인간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격하시켜 고문과 구금 중 사망, 그 밖에 처벌받지 않는 국가범죄 등 그 모든 것을 자행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대테러리즘에 따른 종교와 종족 분쟁, 그리고 군사주의

퐁키 인다르티
(Imparsial,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 안보적 접근 증가
- 가혹한 법과 규제
- 대테러 예산의 급속한 증가 → 안보 및 국방예산 증가 → 부패와 갈등
- 낙인 찍기, 폭력의 합법화
- 시민사회 억압
- 안보 대 시민적 자유



테러집단과 국가 지원을 받는 테러리즘

- 국제 테러 집단
- 반사회적/지역적 테러 집단
- 국가 지원을 받는 테러리즘
- 테러 집단과 국가 기구의 협력:
군벌, 정치적 이해관계



종교 문제에 대한 영향

- 종교적 곡해
- 과격화를 부추김
- 종교적 불관용 및 반(反)다원주의 증가
- 국가 개입 강화
- 사회적 소외
- 폭력의 표적
- 가혹한 법, 규제, 조례



종족 문제에 대한 영향

- 억압
- 낙인 찍기
- 수평적 갈등
- 행동 양식이 달라짐
- 문화적 변화: 의심, 불관용, 반(反)다원주의, 폭동, 폭력 찬동
- 사회적 소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대테러 정책에 접근해야 함 → 교육, 문화, 사회 ... 테러 방지에만 집중하지 말 것
- 사회 개혁: 불법 영업과 무기 밀매 근절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국제협력
- 감시감독 (의회, 시민사회, 언론)

대테러리즘과 아프간 국민의 도전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아프간 여성전문교육원, 아프가니스탄)

아시아의 중심에서 피홀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모든 지역이 도전과 위협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딜레마의 주요 원인은 나날이 증가하는 테러리즘이며, 테러리즘의 연료가 되는 것은 바로 마약이다. 취약한 정부와 더욱 취약한 정치인을 둔 아프간 사람들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폭탄 폭발, 자살공격, 인신납치로 인해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저녁에 집에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를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나 주변국의 많은 간섭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수십 년 간의 전쟁의 산물인 취약한 정치인들은 군벌 지도자로 칭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최근 칸다하르에서 발생한 탈레반의 감옥 탈출은 고위 탈레반 지휘관에게 안전한 탈출로를 제공함으로써 아프간 국민들을 더 큰 위협에 빠뜨렸으며,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새롭게 탄생한 아프간 시민사회는 테러리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행한 연구조사의 결과로 국가 내 정치적, 사회적 무대에서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프간 시민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호와 자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대부분이 위협에 맞닥뜨리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혹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가,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며, 누가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소련연방이 침입했던 사실과 서방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의 성전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는 않을 것이다. 서방국가에게 있어 악몽이었던 소련의 몰락은 이들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사건이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의 8개 그룹, 이란에서 온 11개의 그룹 그리고 공산정권에서 남아 있던 2개의 주요 단체들로 분열되었다. 내란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간 국민의 피로 얼룩진 역사가 되었으며, 지도력을 둘러싼 내전으로 인해 위대한 성공은 멀어진 운명이 되었다. 결국 아무런 정

부기관도 지도자도 없는 곳에서 테러리즘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많은 위협과 문제를 무릅쓰고 빵조각을 찾기 위해 흩어졌다.

나는 시민사회 출신의 아프간 국민으로서 몇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아프간 국민에 의한 대테러 정책은 없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들로부터 다양한 정책이 나온다. 이들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아프간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문제이며, 아프간 국민이 아닌 이들의 안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와의 전쟁의 챔피언인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의 안정이 보다 중시되며, 이란은 반역자로 간주된다.

미국의 이중 정책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현재에도 아프간 국민들에게 전달된 원조금이 탈레반과 반군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원조금의 상당 부분이 건설이 아닌 전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백만 달러의 원조금이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비용과 같이 국제기구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R & R 휴일'과 함께 매년 2차례 자문관들이 바뀌며, 이들 자문관 대다수는 아프간 국민, 문화, 종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아프가니스탄 내 대테러 활동에서 장애가 되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간략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지난 10동안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테러단체에 합류하거나 마약퇴치 정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2.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도인 국가에서 온건한 이슬람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종교 내 적대감 고조에 기여했다.
3. 결과적으로 대테러리즘은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군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심리를 촉발했을 수도 있다. 미국안보프로젝트(ASP)의 버나드 박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대테러리즘에 있어 아프간 주둔의 가치를 문제 삼는 것은 소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Af-Pak)’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권고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대테러리즘 논리를 제거하는 것은 토론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든다. 현재로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종종 파키스탄의 안정,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마약거래 통제 및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두서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9.11 사태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로 해결되기 마련이다. 이전 상태로의 회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둔해야 한다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적 합의는 대테러리즘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함으로써 소수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미국의 도시에서 대량 살상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를 그만둔다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더 나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프간 주둔이 국내에서 그릇된 안보의식을 제공하고 해외에서는 지나친 참여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토론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4. 이슬람 국가의 관심사항에 대한 서방세계의 이중적인 입장과 종교에 대한 무시는 이들 지역 내 테러리즘의 토대를 강화시켰다.

최근 수년간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마약테러리즘, 마약게릴라, 마약국가, 마약근본주의 등 새로운 용어들이 미국 관료, 주요 국제기구 및 광범위한 정책 관련기관의 어휘목록에 새롭게 추가되도록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속적인 반군 진압, 민주적 안정화 및 마약퇴치 조치들이 국제사회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리즘, 안정화 및 민주화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현재 대테러리즘 문제는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없다. 탈레반의 몰락 이후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는 평화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군대만을 배치함으로써 국가재건과 마약퇴치 노력을 약화시켰다. 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에는 많은 중무장 군벌이 존재하고 엄청난 양의 소형화기가 국민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분쟁 이후와 비교하면 인구나 영토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제 평화유지군이 주둔했었다. 2004년 10월 아프간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취약하며 영토의 많은 부분에서 영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다면, 알카에다나 탈레반 전사를 체포하기 위해 지나치게 지역의 군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조기에 군벌을 예측시키는 데 기여했다라면,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가 마약퇴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테러리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나은 준비상태를 갖추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마약퇴치 정책은 상당 부분 미국의 대테러 및 안정화 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이 사면제안을 거부하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대원에 관한 정보 입수를 위해 마약거래에 연루된 군벌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한 미국은 마약척결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아프간 정부는 국가 전체의 안보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마약 척결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마약 차단활동도 비록 역량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아프간 마약퇴치단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신설된 아프간 마약퇴치단은 인원이 적고, 종종 장비가 부적절하며, 훈련이 부족하기에 제한된 수의 적재물만 차단하고 일부의 헤로인 제조시설만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 관료들은 마약 문제가 아프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진단은 사실상 증상과 진단을 혼동하는 것이다. 마약 확산을 통제하기에 앞서 국가 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나 변절한 군벌들을 진압하고, 마약가공과 불법거래를 금지시키며, 불법거래자를 기소, 고발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해 아프간 스스로 군대와 경찰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마약퇴치 노력의 기초는 경제재건, 특히 지방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야 한다. 아프간 전역에서 지방은행이나 비영리단체 혹은 자선단체들을 통해 대안적인 소액대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편 재배의 핵심적인 동인들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대테러정책은 미국의 목적에 따라 고안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아프간 국민들의 관점은 결여되어 있다.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래와 같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 국제 테러 공격계획 및 시행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특히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것
- 아프간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제한된 국제적 지원에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보다 능력 있고, 책임 있고, 효과적인 정부를 설립할 것.

- 줄어든 미국의 지원에도 반군진압 및 대테러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보다 자주적인 아프간 안보군을 강화시킬 것
- 파키스탄 내 문민통제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정부, 그리고 파키스탄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위해 이 같은 목표들을 추진함에 있어 유엔의 지도력과 함께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참여할 것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위한 권고사항 개요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아래의 조치들이 서로 호응하면서 실천되어야 한다.

알카에다의 피난처 제거, 파키스탄 내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통제, 아프가니스탄의 자립성은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전투부대의 철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통합된 민-군 반군진압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이 승인한 군대를 포함하여 아프간 군대는 2가지 우선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1) 첫째는 아프간 정부가 효과적인 정부 통제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알카에다와 그 동맹자들의 근거지가 되는 아프간 남부와 동부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

2) 둘째는 아프간 안보군이 빠르게 성장해서 효과적인 반군진압 작전을 주도하고 동맹국들의 전투 작전 참여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진압 전략은 국민의 안전, 효과적인 지역정부 구축 및 경제개발 문제와 통합되어야 한다. 안정화 및 재건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보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추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테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군대가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이라크에서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 전자매체, 통신 그리고 라디오를 포함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적의 테러작전의 핵심이 되는 선전활동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프가니스탄 내 민간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최우선시 할 것.
- 아프간 국가 안보군(군대와 경찰) 확대할 것
- 아프간 정부에 관여하고 정부의 합법성을 강화할 것
- 화해할만한 반군들과 통합하고자 하는 아프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
- 역량 구축을 위해 노력함에 있어 지역과 지방 정부를 포함시킬 것
-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 공동의 위협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를 참여시킬 것
- 파키스탄과의 경제 협력 분야를 모색할 것
- 파키스탄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위해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미국 주도의 동맹군이 아프간 국민의 대테러 활동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간 국민들이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 아프간 민간인의 생명, 재산, 명예 그리고 사회참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모든 아프간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이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 수백만 달러를 전쟁에 사용하는 대신 아프간의 남성과 여성이 경제적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라바니 교수의 리더십으로 시작된 '평화 부족회의(Peace Jirga)'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매년 70,000 명에 달함에 따라 젊은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테러리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 아프간의 문화와 종교적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아프간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제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키운다.
- 아프간 국민과 아프간의 가치, 종교에 대한 나토 군인들의 부주의와 무시가 시정되어야 한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종교인들은 민

주주의를 부도덕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나 마을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테러리즘에 잡혀있는 것도, 강요된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도 벗어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 명망 있는 자리에 모인 동료들이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버마의 법률과 정책 현황: '국가 테러리즘' 과 인권

소웅(버마민주주의 포럼, 버마)

서론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글에서 지적하듯이, 대테러법이 집행될 때 종종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가 흔히 영향을 받는다. 버마에서 이와 같은 법률은 테러리스트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는 운동가, 인권옹호가, 노조 활동가 및 기타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버마 정부는 '테러리스트 반군'과의 싸움 즉,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구실로 억압적인 조치를 점점 더 정당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부의 가혹하고 억압적인 조치들을 '국가지원 테러리즘'으로 일컫는다.

온라인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국가 테러리즘'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공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버마정부는 지난 수십 년 간 장악해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군대에서 초안을 작성한 헌법 하에서 군대가 임명한 선거위원회가 감독한 '사기' 선거에서 당선된 전직 군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민간 정부가 올해 들어섰다. 변화는 허울뿐이고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준수하며, 억압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응을 약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데 있어 테러와의 전쟁이 어떻게 정부에게 백지권한을 부여했는지를 목격했다.

배경

버마는 1962년 이래 계속된 군사정권 하에 놓여 있다. 부정과 협박, 사기로 얼룩진 2010년 11월 선거 이후 예전의 군부는 소위 민간 정부를 지배하고 있다. 이 신생 정권은 여전히 버마 인구의 대략 40%를 차지하고 55%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을 탄압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1996년 이래 정부의 군대는 버마 동부에서 3,600개의 마을을 파괴하고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몰았으며 이는 그 규모에 있어 수단 다르푸르(Sudan's Darfur)에서의 분쟁과 비교될 수 있다.

헌법

2008년 헌법은 군부의 엘리트들이 군대에 부여된 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영속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헌법은 소수민족의 권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인 민주적, 기본적 인권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1990년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명령 제5/96호에 따라 헌법 토론에 참여 및 입법과정에 대한 비판이 일체 금지되었다. 더욱이 휴전단체를 포함한 소수민족 세력의 논의 및 제안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그리고 헌법은 강요, 압력, 기만 및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된 사기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국민투표는 또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인해 대대적인 파괴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되었다.

이러한 헌법을 토대로, 정권은 자신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스스로 면책을 부여했다. 헌법 제445조에 따르면, “그들의 책임에 따른 의무를 공식으로 이행한”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 또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위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직 장관이자 국무총리 출신인 우 떼인 세인(U Thein Sein)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권은 민간의 외양을 갖춘 국가의 핵심 입법, 행정 및 사법기관을 전직 군부 관료와 그들의 대리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의 당

원들로 채움으로써 세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입법부에서 연방의회(Union Assembly)의 의장과 부의장은 전직 소장과 장군이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민회(People's Assembly)와 국회(National Assembly) 또한 의장직은 전직 소장 출신이 부의장직은 연방단결발전당 당원 출신이 맡고 있다. 행정부 총 35개의 장관직 중에서 26개를 전직 또는 현직 군부관료가 맡고 있으며 연방단결발전당 당원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억압적인 국내법

버마의 사법제도는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 재판은 종종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고자 상당수가 변호사나 가족도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개인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공정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정치적 반대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기부하는 사람 혹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사본을 배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버마에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42개의 감옥, 109개의 노동수용소 및 그 수가 알려지지 않은 심문센터가 있다.

카렌국민연합(Karen National Union), 전버마학생민주전선(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 민주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및 심지어 미얀마 변호사협회(Burma Lawyers' Council)를 포함하여 현 정권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93개의 단체 중 어느 곳과도 접촉을 하는 사람은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들 단체와의 연관성은 자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정당등록이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불법단체와 접촉을 하거나 연계되지 말라는 지시를 정당들에게 내렸다는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형법 제121조, 제122(1)조, 제122(2)조, 제124(a)조 또는 (b)조, 불법단체조합법(Unlawful Association Act, 1908), 국가보호법(State Protection Law, 1975), 긴급조항법(Emergency Provisions Act, 1950),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Law, 2004), 인쇄업자 및 출판사법(Printers and Publishers Act, 1962), 공식기밀법(Official Secrets Act, 1923) 및 텔레비전 및 비디오법(Television and Video Law, 1996)과 같이 정치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취급하는 수많은 법이 있다.

2011년 2월, 22세 블로거인 까웅 맛 흘라잉(Kaung Myat Hlaing)은 정치수감자 석방을 위한 포스터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미 2010년 4월 15일 랑군(Rangoon/Yangon)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탄폭발 사건에 연루되어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같은 달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ratic Voice of Burma: DVB) 리포터인 마웅 마웅 제야(Maung Maung Zeya)는 전자거래법 및 불법단체조합법에 의해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사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이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여 자행한 잔혹행위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상기 언급한 억압적인 법에 의해 구금된 정치적 수감자가 2,000명이 넘는다. 정권은 국방국(Directorate of Defense Services) 산하 군정보부와 특별조사국(Bureau of Special Investigation: BSI), 내무부 산하 미얀마 경찰대 및 특별정보군((Myanmar Police Force and the Special Information Force) 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기관은 지휘체계를 통해 현 정부의 최상위 부서의 통제를 받는다.

계속되는 인권 침해

민간의 외양을 갖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버마(미얀마)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협약을 비준하였으며, 국가평화발전위원회 명령(SPDC Order) 제1/99호는 국가 내 강제노동을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제 및 국내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강제노동을 남용해 왔다. 버마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군인으로 모집하지 못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약 70,000만 명의 아동군을 모집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국경 지역의 계속되는 무장 분쟁으로 인해, 정권은 '4가지 차단' 전략을 사용하여 분쟁지역으로부터 마을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 전략은 무장 반군이 징집, 정보, 보급, 재정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의료서비스, 교육, 고용에 대한 접근 기회 감소와 더불어 질병과 건강악화, 폭력, 인신매매, 강제노동에 직면하게 되었다.

버마는 강간을 전쟁에서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간인에 대한 전쟁 수행을 금지하는 제네바협약의 4번째 서명국이며,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비준국이다. 하지만 군부는 그들의 책임을 무시하고 산, 몬, 카렌, 팔라우, 친, 카친을 포함한 소수민족 여성들을 성폭력하고 강간했다.

산여성행동네트워크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2011년 4월 12일)를 통해 산주 북부군(Shan State Army North: SSA-N)을 대상으로 한 현 버마 군대의 공격과 불교사원의 포격, 집단강간, 여성의 인간방패 사용을 포함한 민간인 잔혹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 국가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조사위원회

토마스 오제아 키타나(Tomas Ojea Quintana) 버마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Burma)은 보고서를 통해 선거 이전에 버마 국민에 가해진 억압이 증가하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모든 정치적 수감자의 무조건적 석방과 조사위원회를 통한 책임자 처벌 및 정의 구현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오제아 키타나는 새로운 선거제도와 당국에 의한 그 시행이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더욱 제한했다고 말했다.

오제아 키타나가 2010년 3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획기적인 보고서에서 그는 버마 국민의 운명과 그 책임이 국제사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후 책임은 국제사회에게 있다... 특히 2008년 헌법 제 445조는 정부가 향후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어 우려가 된다. 헌법에 담긴 면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엔은 인권위원회, 총회, 안보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또는 사무총장의 자체 권한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14개국이 이러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할 때이다.

결론

철학자들은 국가 테러리즘이 일반적으로 '비국가 테러리즘'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고 믿는다. 현대 국가는 그 속성상 비국가 행위자보다 더 큰 희생자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는 은밀한 잔혹행위와 함께 비밀, 기만 및 위선에 의해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버마에서의 국가 테러리즘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테러리즘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버마에서 이러한 행위가 끊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관련 국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가능한 한 빨리 설립하는 것이 이러한 수단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네팔의 사례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책임성 감시 위원회, 네팔)

소개

“개인적으로는, 그 같은 국제테러 주모자에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크게 안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빈 라덴 사망에 대한 성명의 일부로, 반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성명은 테러에 대처하는 유엔의 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9.11이후 세워진 전 지구적 대테러 전략이 빈 라덴 사망 이후 재검토 될지는 예상하기 매우 어렵다.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에 대한 공격은 국제사회에 전 지구적 “대테러전략”을 만들어냈고, 이는 이후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모두 수용되었다. 그것은 네팔이 당시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Unified Communist Party of Nepal: CPN) 당원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여, 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의견을 이끌어내고, 안보지원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은 네팔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의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왕립네팔군(현 네팔군 Royal Nepalese Army: Nepal Army)의 안보작전을 허용하는 반테러법을 제정했다.

비상사태 선포와 반테러법과 반테러정책의 도입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특히 훼손할

수 없는 권리마저 침해되었고¹⁾,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extra judicial killing), 공권력 개입에 의한 납치(enforced disappearance), 자의적 구금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²⁾. 사실상 법치의 붕괴는 공안요원의 이러한 행태를 부추겼다. 공안에 의해 수많은 언론인, 학생지도자, 정치활동가, 변호사, 마오주의에 동조한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된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로써 그들은 구금된 가운데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테러조치의 도입은 테러 행위 자체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 필요성과 성공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팔의 사례는 그러한 조치 이전에 있었던 소위 '인민 전쟁(Peoples War)'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음을 보여 준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 특히 세계 및 지역 단위에서 시행되는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네팔의 사례를 통해 무엇이 테러리즘을 구성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정치적 및 법적 맥락

네팔은 1996~2006년 사이 10년 간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내부적으로 무장 갈등을 겪었다. 분쟁은 2001년 11월 비상사태 선포와 다수의 보안군 진지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후에 모택동주의자와 네팔 왕립군대가 충돌하면서 격화되었다³⁾.

네팔 정부는 이 반란의 주원인을 오로지 법과 질서의 문제로 보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반란을 진압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들은 반란의 원인이 외세에 있는 양 몰아갔는데, 대개는 그 외세가 인도 혹은 어떤 때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마오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설득적인 논거도 내놓지 못하였다.

2001년 11월 26일 가넨드라(Gyanendra) 왕은 네팔 헌법 제115(1)조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왕은 헌법상 권리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였고, 마오주의자를 '테러리

1) 자세한 내용은 2003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p.62. 7.1) 참조.

2) '네팔: 실종 위협의 증가, Human Rights Watch,

<http://hrw.org/english/docs/2005/02/09/nepal10152.htm> (최근 방문: 2007.12.19)

3) 마오주의자들의 반란은 네팔의 입헌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3천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seconline.org/hrvdata/kill_data.php 참조.

스트로' 규정하였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조항인 제 12, 13, 15, 16, 17, 22, 23조는 모두 정지되었다. 제12조2항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13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 15조는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16조는 정보 취득의 권리(right to information)를, 제 17조는 재산 소유 및 처분권을, 제 22조는 사생활을 지킬 권리를, 그리고, 제23조는 헌법상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네팔의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는 2001.11.26~2002.8.28 사이의 비상사태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자의 81퍼센트는 국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상사태 종료 후, 사망자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국가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마오주의자들에 의한 사망자 비중보다 훨씬 크다.

비상사태는 두 번 연장되었는데, 한 번은 의회⁴⁾의 승인에 따른 것이었고, 두 번째는 2002년 5월 27일 의회를 해산시키고 헌법 절차⁵⁾를 우회하여 이루어졌다. 비상사태는 9개월 동안 유지되었고 2002년 8월 27일에 마침내 해제되었다.

III. TADO/TADA의 공포

왕은 또한 비상사태 선포 후 3일 뒤에 '2001 테러와 파괴행위(예방과 규제)에 관한령(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Prevention and Control) Ordinance, 2001: 이하 TADO로 명기)'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 명령을 통해 마오주의자와 그 자매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선언하였다. 2002년 3월, TADO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2 테러와 파괴행위(통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Control and Punishment) Act, 2002: 이하 TADA로 표기)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 법의 기한을 (법을 폐지할 때까지로 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⁶⁾로 2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마오주의 문제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4) 거의 모든 정당이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의회는 2002년 2월 22일 이후 3개월 간의 비상사태 기간을 승인했다.

5) 2002년 5월 22일,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총리는 의회를 해산했는데, 자신이 속한 네팔의회당(NC)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당이 비상사태 연장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6) 네팔 정부는 테러법의 기한을 2년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2002년 3월 26일자 the Kathmandu Post; BBC Monitoring Service 의 Nepalnews.com website 모니터링 내용에서 재인용.

TADO령을 공포하여 기간을 연장시켰다. 2004년 10월13일, 네팔 정부는 더 강력한 TADO령을 공포하여 공안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공안이 법원의 조사 없이 용의자를 최대 1년간 “사람이 지낼만한(suitable for human being)” 장소에 구금해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반정부 인사에 대한 납치와 고문이 행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7).

이러한 구금 규정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⁸⁾ 통해 공안이 사람들을 구금하고 또는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명을 죽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파르바트(Parbat)에서 남성 1명, 루판데히(Rupandehi)에서 여성 1명, 라미캡(Ramechhap)과 까브레(Kavre) 지역에서 각각 남성 1명씩이 체포 또는 구금된 후 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테흐라툼(Tehrathum)에서 21명, 신두팔촉(Sindhupalchowk) 지역에서 4명을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살해되었다.⁹⁾ 이 보고서는 TADO령이 실행된 이후 구금자 수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사건의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상사태 규정은 인권의 위기와 법치의 위기를 더 악화시켰고, 민주적 절차를 붕괴시켰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절차적 권리 등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제한하였다.

IV. 인권적 함의

TADO는 불법으로 수많은 마오주의 용의자, 언론인, 변호사, 인권운동가 등을 구금하고 고문하는 수단이 되었다. 비상사태 하에서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권리가 중단되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네팔의 인권 변호사는 단언한다.

TADO에 의하여 구금된 다수는 미성년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근거 서류도 없이) 체포된 날로부터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방불명이다. 인신보호영장 덕분에 석방된 몇 명도 석방된 지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 다시 체포되었다.

7) 자세한 내용은 고문방지협약(CAT), 2.3.4차 네팔 정부보고서에 대한 대안보고서 38쪽 참조.

8) ‘비상사태와 인권 2003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카트만두, 2002, 14쪽.

9) 위의 글.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었고, 몇몇 마오주의 출판물은 폐간되었다. 증가하는 마오주의자와 공안 간의 폭력 사태를 취재하려는 언론인은 양측으로부터 고문과 자의적 구금을 당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었다. 마오주의 반군을 공격하는데 있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결 처형이 사실상 국가 정책이 되었다.

TADA 시행 기간에도 구금이 광범위하게 계속되었다. 많은 용의자가 법에 허용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구금되었다¹⁰⁾. 구금은 흔히 비밀리에 독방에서 이루어지고, 친척의 면회나 법률적 자문도 금지된다.¹¹⁾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TADA 시행 하에서 2003년 7월까지 약 1천명이 구금되었고, 이 중 400명이 석방되었다. 구금된 사람 중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다¹²⁾.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2003년 초 네팔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한 구금 사례의 “절대 다수가 체포영장 없이 이루어졌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체포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¹³⁾ 지방관료의 책임자가 불법으로 서명도 없는 구금허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보고서가 많이 접수되었다.¹⁴⁾

군대 때문에 비밀 구금이 연장됐다는 보고도 많았다. 군법에 따르면 군대는 군사작전 도중에만 구금할 수 있고, 24시간 내에 민간 당국에 피구금자를 인도해야 한다¹⁵⁾. 2004년 1월, 네팔 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적어도 254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하였다¹⁶⁾. 이들의 행방과 운명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10) ‘네팔’ (2003. 3. 31), 미 국무부의 인권관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2002,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URL: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2/18313.htm>

11) ‘네팔: 무장갈등 상황에서 광범위해진 실종’ (2003. 10. 16).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URL: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310452003?open&of=ENG_NPL

12) ‘네팔: 무장갈등 상황에서 광범위해진 실종’ (2003. 10. 16).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URL: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310452003?open&of=ENG_NPL

13) ‘인권과 정의의 실현: 이행되지 못한 의무’. (2003. 6.). 국제법률가위원회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센터 (네팔 조사단). URL: http://www.icj.org/news.php3?id_article=2950&lang=en

14) ‘네팔, 깊어지는 인권 위기: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한 때’ (2002.12.19).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URL: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310722002?open&of=ENG_NPL. ‘인권과 정의의 실현: 이행되지 못한 의무’. (2003. 6.). 국제법률가위원회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센터 (네팔 조사단) 참조. URL: http://www.icj.org/news.php3?id_article=2950&lang=en

15) ‘네팔: 무장갈등 상황에서 광범위해진 실종’ (2003. 10. 16).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URL: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310452003?open&of=ENG_NPL, ‘인권과 정의의 집행: 이행되지 못한 의무’. (2003. 6.).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센터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네팔 조사단). URL: http://www.icj.org/news.php3?id_article=2950&lang=en

16) ‘최근 4개월 동안 254명 실종: 네팔 변호사협회’ (2004.1.23).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전자게시판). URL: <http://www.nhrc nepal.org/?ID=229&AFD=0>

TADO/TADA는 '테러활동'에 가담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시민을 체포, 구금, 심문할 수 있는 권한과, 사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채 당국이 장기간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공안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가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기소되지 않을 권리도 강화되었다.

인신보호영장 관련 절차는 타당한 사법적 검토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군대, 양측 모두 구금자 목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국이 정확히 누구를 구금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¹⁷⁾ 또한, 당국이 특정인을 구금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데도, 위증죄 항목이 없어서 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¹⁸⁾ 인신보호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은 무시되기 일쑤여서 석방된 구금자를 바로 다시 체포하거나 아예 명령을 거부하기도 한다.¹⁹⁾

이러한 문제는 TADA 제 20절에서 순수한 동기(모호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서 한 행위는 면책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정부 관리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구금을 관행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되고 있다.

V. 국제사회의 역할

미국, 특히 부시행정부는 네팔의 정치적 불안과 마오주의 세력을 활용하여 네팔 국내 문제에 더 깊이 개입하였다. 네팔이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테러척결과 테러 공격 방지를 위해 네팔 정부와 협력한다”는 5년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원조 재정적 지원과, 네팔 군대 훈련을 포함한 장비 지원 등 양 측면에서 이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네팔 내에서 흔치 않은 미국의 전략적 조치로 인식된다.

17) '인권과 정의의 실현: 이행되지 못한 의무'. (2003. 6.). 국제법률가위원회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센터 (네팔 조사단). URL: http://www.icj.org/news.php?id_article=2950&lang=en.

18) '네팔, 깊어지는 인권 위기: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한 때' (2002.12.19).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URL: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310722002?open&of=ENG_NPL

19) '인권과 정의의 실현: 이행되지 못한 의무'. (2003. 6.). 국제법률가위원회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센터 (네팔 조사단). URL: http://www.icj.org/news.php?id_article=2950&lang=en.

마찬가지로, 미국은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31일, 행정명령 13224호 하에서 네팔공산당을 특정하여 미국 내 또는 미국인 소유 자산을 동결하고 네팔공산당과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또한, 네팔공산당의 가명인 연합혁명인민회의 (United Revolutionary People's Council: URPC)와 마오주의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 PLA)등도 리스트에 올려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는 가장 오랫동안 네팔에 군사장비를 공급해온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마오주의자들의 반란과 관련한 인도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다. 일부 정치인은 마오주의자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도가 아직도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사실 인도는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12개 항 협정의 핵심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인도와 미국은 대테러리즘 공동실무단을 통하여 국제 테러리즘 전쟁에서의 상호협력을 제도화하였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역할

남아시아 8개국은 지역 차원의 반테러 협력협정을 채택하였다. 반테러협정은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의 동결, 안보책임자간 정례회의, 정보교환, 그리고 테러와 마약 범죄에 대응할 인력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7월 7일 아프가니스탄 주재 인도대사관을 폭발시켜 41명을 사망하게 한 한 군사집단을 파키스탄 정보요원이 도왔다고 비난한 것을 감안하면 시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주장은 이틀간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SAARC는 몇 차례에 걸쳐 대테러리즘을 최우선 의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전히 과제이다. 그러나 인도의 정책은 네팔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VI. 무장갈등 이후 반란군 진압 정책

네팔 정부는 테라이(Terai)에 경찰력을 증강하였고,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준군사조직과 네팔 군대의 역할을 강화한 반면, 경찰과 형사법 체계에는 상응하는 지원과 개혁이 없었다. 인권단체가 경찰과 당국에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일상적인 작전 수행 도중 무장한 범죄집단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경찰의 상투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인권상황은 네팔 남부의 평지(Terai)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특수한 보안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인권침해가 늘어났다.²⁰⁾

VII. 결론

네팔의 “반란군 진압정책”은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하고 소수 집단과 기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네팔의 사례는 정부가 채택한 대테러 조치가 분쟁을 부채질하고 인권상황을 악화시켰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민 전쟁’의 근본적 요구는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인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군주제가 폐지되어 네팔은 ‘네팔 연방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정한 인민의 공화국”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로운 헌법이 어떤 정부 체제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물론 마오주의자들의 활동과 전술은 테러 성격을 띠었으나, ‘인민 전쟁’의 원인은 빈곤, 실업, 카스트 제도와 성차별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 등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병폐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일부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를 제외한 정부와 국제사회는 그것을 단순한 테러리즘으로 취급하였다. 네팔의 사례는 테러행위와 정부 체제에 반대하는 혁명/운동 또는 반란이 구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제사회, 특히 인도와 미국은 하나같이 그것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네팔 군대에

20) 전국 규모의 비정부단체인 DIHR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8년과 2010년에 Terai에서 134건이 넘는 허위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술과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였다. 네팔 당국은 보안군을 동원하고 무력사용을 승인하였으나, 반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내/국제적 법률적 의무가 준수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또한, 면책조항 때문에 전쟁 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그러나 2007년 포괄적 평화협정(CPA)을 체결한 뒤, 네팔 정부는 반테러법을 폐지하고 수감된 공산반란군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오주의자는 네팔법과 정치체제 하에서 더 이상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미국과 인도의 공식 기록에서는 여전히 테러리스트이다.

이제 문제는 당시 정부와 국제사회가 채택한 대테러 조치가 타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타당하였다면, 왜 정부는 마오주의 세력이 제기한 의제에 합의해야 했으며, 왜 대테러 법률과 정책은 폐기되었는가?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파키스탄 국가 보고서

I. A. 레만 (국가인권위원회, 파키스탄)

I. 서문

파키스탄은 민주연방으로 1973년 헌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채택된 이래로 반 이상의 기간 동안 군부 독재자들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선거로 선출된 민간 지도자들을 내쫓고 헌법을 대폭 수정하였다. 현 정부는 2008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2010년 연방정부기관(federating units)에 권력을 부여하고 본연의 의회제를 되찾기 위해 혁신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파키스탄 사법체계는 인도식민지를 위해 영국이 제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최고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각각의 연방정부는 고등법원을 두어 하위 사법기관을 관장하고 있으며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도 고등법원이 있다. 지아울 하크(Ziaul Haq) 장군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1977-88) 시행된 이슬람화 프로그램 하에서 이슬람 법원인 연방 샤리아 법원(Federal Shariat Court)은 고등법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 재판과 상소심 모두를 심리하고 이슬람 관습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다른 법에 우선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샤리아 법원의 판사는 일반 판사들과 종교학자들로 구성된다. 법원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항소심은 세 명의 대법원 판사와 두 명의 종교 학자들로 구성된 대법원의 샤리아 항소 판사에게 이양된다.

또한, 파키스탄에는 금융이나 마약관련 범죄, 반테러를 다루는 특별 법정이 있다.

파키스탄 헌법은 신앙을 바꾸고 성인남녀가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에 규정된 모든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008년 이전까지 파키스탄은 인종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만을 비준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하였다. 2008년 이후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방지협약도 비준하였다. 다시 말해, 파키스탄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인종차별철폐조약(CERD), 아동권리협약(CRC),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 그리고 고문금지조약(CaT)이 명시하는 모든 국제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있다.

II. 테러관련 법률

1.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테러에 해당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식민지 시절 (1859-1947) 영국은 벵갈규정(Bengal Regulation)과 (아직도 파키스탄 부족사회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국경범죄규정(Frontier Crimes Regulation)과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사법권한이 없는 당국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 강력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키스탄은 1860년 제정된 인도형법을 1860년 파키스탄형법으로 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폭동을 선동하고 왕이나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들어 처음 30년 동안 인도와 분리되기 이전에 정치적 테러의 물결이 일었고 식민지 정부는 롤라트 (Rowlatt) 법안이나 펀자브 살해 및 잔혹행위처벌법(Punjab Murderous Outrages Act)과 같은 가혹한 법률을 채택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테러범으로 고발당한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2. 파키스탄 내 테러는 특별 법원에서 테러활동 억압을 위한 법령(Suppression of Terrorist Activities Ordinance)이 1974년 공포되면서 절정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974년은 정치적으로 이견을 가진 세력이 무력으로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했던 때였다. 이 조례는 1975년 의회에서 통과되어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거절되었다. 무효화된 법률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사법적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1987년 신속재판을 위한 특별법원령(Special Courts for Speedy Trials Ordinance), 1990년 테러영향지역에 대한 (특별법원) 법령 (Terrorist-Affected Areas (Special Courts) Ordinance), 1992년 테러영향지역법률(Terrorist-Affected Areas (Special Courts) Act) 등이다. 마침내 1997년에는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 ATA)이 채택되어 정치, 민족, 종교종파, 순수 범죄 등 다양한 테러행위를 처벌하는데 원칙이 되었다. 반테러법은 이와 병행하는 법체계(legal system)를 만들어냈다. 이 법은 “테러 및 종교종파와 관련된 폭력”을 막기위한 특별법원을 탄생시켰고, 또한 극악범죄를 속결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반테러법은 인권활동가들에게서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 법은 무죄의 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을 거부하고, 모든 피고인은 무죄를 증명하기 전까지 유죄로 가정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휴정을 어렵게 하여 속결을 강조하고 하여, 재판과정에서 한 자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부재판결(trial in absentia)을 내리기도 한다.

인권법과 반테러정책으로 지명한 나잠 유 딘(Najam U Din)은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주제는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테러리스트인 사람들 - 파키스탄 반테러법과 그 시행에 따른 인권에의 함의’(Terrorist unless proven otherwise -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anti-terror laws and practices in Pakistan’, HRCP, 2007)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본 형법과 절차에서 본연의 보호조항들이 빠지면서 반테러법과 병행하여 법체계가 생겨났는데, 이는 피의자 권리의 상당부분을 없애고 대신 신속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정상적 형사법원에서는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해 줌으로써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반테러법 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이 열리고 피의자가 합당한 권리를 누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3. 예방적 구금법. 파키스탄 정부는 1952년 파키스탄 보안법(Security of Pakistan Act), 1960년 공공질서유지조례(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dinance) 등 테러리스트 활동에 참가하거나 이를 돕는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억류하기 위해 예방적 구금법을 자주 사용하여 왔다.

4. 1923년 공직자비밀엄수법(Official Secrets Act). 이 법은 간첩활동, 안보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에게 누출하는 범죄를 주요하게 다룬다. 테러리스트에게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이 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5. 군복무법 (Defence services' laws). 육해공군은 육군법(Army Act), 해군법(Navy Act), 공군법(Air Force Act)을 각자 제정하여 반정부 범죄 혐의를 받은 군인을 군법 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육군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III. 법률 남용

9.11 사태 이후 파키스탄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억류되고 미국 당국에 이양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무시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수년간 '테러리스트'라 지목 받은 사람은 누구도 정당하거나 심지어는 공정한 재판조차 받을 수 없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을 명백히 보여주는 몇 예이다.

- 카라치(Karachi)에 위치한 발로흐(Baloch)에 사는 두 여성이 스왓(Swat)에서 체포되었다. 한 여성은 팔에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다. 신문은 이들을 “자살폭탄범”으로 묘사하였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인신보호를 위한 청원서(Harbeas Corpus Petition)를 제출했지만 여성들이 탄원서에 명시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1년 후 여성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공포에 떨며 어느 기관에 끌려갔는지를 합구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정부 기관에 붙잡혀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 카라치(Karachi) 출신 고등학생 라자 자이디(Raza Zaidi)는 테러리스트로 오인 받아 한동안 구금되었으나 유죄를 증명할 수 없어 풀려났다. 자이디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초청으로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세미나 이후 라호레(Lahore)에서 다시 체포되었다가 결국 합구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 나지르 아흐매드(Nazir Ahmad)는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범법혐의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체포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인신보호청원서를 라호레 고등법원(Lahore High Court)에 보냈고 고등법원은 그를 구제하기 위해 집행관을 파견하였다. 집행관은 나지르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찾았지만 경찰은 나지르의 신변 인도를 거부하였다. 고등법원이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방 경찰서장은 나지르가 불법 무기와 폭발물 소지죄로 반테러 범정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공판에서 그는 나지르의 불법무기 소지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반테러 혐의는 벗었으며, 보안법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 법이 가장 심하게 남용되었던 경우는 아디알라의 11명(Adiala Eleven) 사건으로 11명의 남성이 테러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이다. 하지만 그들은 구금되었던 라왈핀디(Rawalpindi)의 아디알라 형무소에서 석방된 것은 아니었다. 인신보호청원이 제출되자 형무소 관계자는 구금되었던 11명이 정보국에 인도되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다. 마침내 군부는 법원에 말하기를 동료 테러리스트들이 이들 11명을 형무소에서 데려갔지만 군사 작전 지역에서 군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고 테러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 여러 해 동안 시민사회 단체들은 부지불식간에 실종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06년 이들 실종자 수가 4천명에 이르렀지만 모든 실종사건을 문서화 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2007년부터 “실종자” 구제를 위한 탄원을 심리하고 있다. 2010년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위원단은 134명의 실종자들을 추적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실종사건 다수의 책임이 보안담당자에게 있다며 추가로 위원단을 설립하여 실종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장기간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위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단은 만들어졌지만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고 있다.
- 테러와의 전쟁이 불러일으킨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용의자의 불법 및 승인되지 않은 범죄인 인도문제이다. 무샤라프 장군(Gen. Musharraf, 군부 지도자 1999-2008)은 그의 저서 “포화 속에서(In the Line of Fire)”를 통해 파키스탄이 672명에 이르는 알카에다 지도자와 활동가를 체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369명 이상을 미국 당국에 인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인도된 용의자들이 모두 외국인은 아니며 파키스탄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몇몇은 관타나모(Guantanamo Bay)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다.

IV. 현재 우려되는 문제

현재 파키스탄 시민사회단체는 탈레반이나 그 공범자일 수 있다며 보안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2,500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국이 구금한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V.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소리는 높이지 못하고 있다.

VI. 권고사항

1. 파키스탄 정부는 어느 국가도 테러문제를 다루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포기할 권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2. 실종자들을 되찾기 위해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키스탄은 실종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고 불법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3. 파키스탄은 이미 비준한 바 있는 유엔 인권 협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국내법을 긴급히 제정해야만 한다.

스리랑카에서의 대테러정책과 민주주의 및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법치사회기금, 스리랑카)

1.0 들어가며

스리랑카에서 26년에 걸친 내전이 끝난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각한 국제 인도법 및 인권법의 위반¹⁾이라는 문제제기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으며, 또한 대(對)테러 관련법은 폐지되지는 않고 일부만 수정되었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부의 안전에 대한 무력 위협이 — 나라 안에서나 바깥으로 부터 —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가 없는 테러와의 전쟁 또한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것은 아니지만, 좌익 통일전선(United Front, UF) 정권 시절, 싱할라족 청년들이 일으킨 1971년의 무장 반란²⁾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틀을 잡아 소급 적용하도록 제정한 것이 최초의 대테러 법률이었다. 비록 이 형사정의위원회법(Criminal Justice Commission Act, 1972년 법률 14호)은 오래 가지 않았지만 — 1977년에 폐지되었다 — 이 법의 심각한 독소 조항 몇몇은 폐지 2년 후 우익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정권이 제정한 새 법률에 포함된다.

1979년의 테러방지[임시조치]법(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PTA)은 타밀족 청년들의 무장 투쟁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다수 싱할라족을 우대

1) <스리랑카에서의 책임문제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 유엔, 뉴욕, 2011년 3월 31일, 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POE_Report_Full.pdf

2) Halliday, F., <실론 봉기(The Ceylonese Insurrection)>, New Left Review (London), 1/69(1971년 9월-10월), 55쪽~91쪽; 비상 권력에 대해서는 Canagaratna, A. J. (ed.), 《Selected Writings of Regi Siriwardena, Vol. 2: Politics and Society》, International Centre for Ethnic Studies, Colombo 2006, 285쪽~306쪽에 실린 <The 1971 Insurrection: CRM's Appeal to PM> (1971년 12월 10일)을 참조할 것.

하는 정책이 소수민족인 타밀족³⁾에 대해 차별적이었고, 또 타밀족이 전통적으로 터를 잡고 살아온 북부 및 동부 지역에서의 자치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테러방지법은 인종차별정책(apartheid)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과, 아일랜드 반군을 상대로 적용하던 당시의 영국 법을 본떠 만들어졌다.

이 비정상적인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행정부에는 이미 영국 식민지 시절의 공공안보법(Public Security Ordinance, PSO)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공공안보법은 1947년에 제정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독립 운동의 일부이기도 했던 노동계급 파업을 억누르기 위한 법이었다.

스리랑카에서 비상사태관련 법제는 제정 이후 선출된 정부 권력에 의해 갱신되어 왔다. 정권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그리고 시민사회운동과 어느 정도의 언론 자유를 통해 통제받는 다당제 정치제도 하에 있다. 1978년 이후 비상사태 체제가 장기간 지속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가장 크게 후퇴했는데 이 동안 시장이 자유화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떠밀려 스리랑카 경제가 급격히 세계화되는 시기였다.

스리랑카의 대테러법 및 대테러정책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벌어진 참극 이후 범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이 촉발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스리랑카 국내에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국제사회의 인권 및 형사사법 규범, 절차에 명백히 어긋나는 법률과 정책, 관행이 정당화되기 시작했다. 둘째, 스리랑카 내전을 군사주의의 영향으로 왜곡된 민족자결권 투쟁이 아니라 토착 테러리즘 문제인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셋째, 타밀 분리주의 반군인 “타밀 일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를 고립시키기 위한 해외 로비, 은밀한 첩보 혹은 군사작전 및 공개적 군사행동, 반자유적인 법률,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외에 정부의 대테러 공세에 관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3) 분쟁의 근원에 관해서는 Tambiah, S. J., 《Sri Lanka - Ethnic Fratricide and the Dismantling of Democra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91을 참조할 것; 또한 국가 폭력 및 비국가 폭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Hoole, R., 《Sri Lanka: The Arrogance of Power - Myths, Decadence and Murder》, University Teachers for Human Rights (Jaffna), Colombo 2001을 참조할 것; 또한 Saigol, R., 《The State and the Limits of Counter-Terrorism: The Case of Pakistan and Sri Lanka》, Council of Social Sciences Pakistan, Islamabad 2006 에서 흥미로운 고찰을 접할 수 있다.

2.0 테러 대책의 법률적 구조⁴⁾

스리랑카에서는 위에서 밝힌 대로, 두 가지의 법령이 ‘국가안보⁵⁾’ 목적으로 함께 적용되고 있다. 그것은 공공안보법(1947년 법률 25호)과 테러방지(임시조치)법(1979년 법률 48호)이다. ‘국가안보’는 현대적인 테러리즘 담론이 나타나기 전에 헌법 및 국법, 정부의 정책 성명 등에서 가장 흔하게 쓰인 표현이었다. 9·11 이후의 새로운 대테러 법률은, 서방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진행하는 공동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테러리즘의 자금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제정된 테러 재원 억제 협정에 관한 법률(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Financing Act)과 2006년의 자금세탁 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상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2.1 공공안보법

공공안보법은 헌법 155조에 의거해,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간단하게 비상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 비상조치는 헌법을 제외한 일반법 조항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거나, 효력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안보법에 따르면 ‘공공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 및 반란, 폭동, 소요의 제압, 혹은 공동체의 삶에 필수적인 물자 및 서비스 공급 유지’가 이러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사태는 우선 최장 14일 동안 유효하다. 그 후로는 한 달마다 의회가 비상사태의 연장을 비준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의 경우는 2011년 5월 5일이었

4) Law & Society Trust (ed.), 《Aspects of 50 Years of Law, Justice and Governance in Sri Lanka》, Law & Society Trust, Colombo 2005, 399쪽~434쪽에 실린 Weliamuna, J. C. 의 《The Story of National Security Laws in Sri Lanka》; Coomaraswamy R. and C. de Los Reyes, 《Rule by emergency: Sri Lanka’s postcolonial constitutional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New York and Oxford), Vol. 2, No. 2 (2004), 272쪽~295쪽; Welikala, A., 《A State of Permanent Crisis: Constitutional Government, Fundamental Rights and States of Emergency in Sri Lanka》,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olombo 2008, 173쪽~206쪽;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Sri Lanka: Emergency Law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March 2009, <http://www.icj.org/IMG/SriLanka-BriefingPaper-Mar09-FINAL.pdf>; 그리고 Bastiampillai, B., Edrisinha, R. and N. Kandasamy (eds.), 《Prevention of Terrorism Act: A Critical Analysis》,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olombo 2010.

5) 일반적으로 Karunan, Victor P., 《The Security Syndrome: Politics of National Security in Asia, FORUM-ASIA and Focus on the Global South》, Bangkok 1997 를 참조할 것. 특히 1쪽~19쪽, 31쪽~44쪽, 153쪽~169쪽.

다. 1986년에 제10차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 전체의 2/3 이상의 지지를 요구하는 조항을 없앤 이후, 간단히 과반수만 넘으면 비준이 가능하다. 의회에 비상사태를 취소하거나 최소한 심의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스리랑카 의회 의원 대다수의 민주주의적 양식과 양심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일이다. 비상사태 연장 비준에 대한 의회 토론은 참석률이 매우 낮으며, 타밀계 야당 의원들만이 끊임없이 이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개별 법규 -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호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87년에 대법원은 조셉 페레라 (Joseph Perera)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상 법규의 필요성, 그리고 비상 법규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에 가해진 제한과 비상 법규가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긴밀하거나 합리적인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⁶⁾

현재의 비상사태는 타밀 호랑이 반군이 라크시만 카디르카마르(Lakshman Kadirgamar) 외무장관을 암살한 후 2005년 8월⁷⁾에 선포된 것이다. 2006년 12월에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비상 정국은 더욱 삼엄해졌다. 이 법규는 테러방지법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미국의 법(애국법 포함)에서 빌려온 조문을 통해 처음으로 '테러리즘'을 정의하고 있다.⁸⁾
<http://www.minorityrights.org/?lid=4583>

국제사회에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정부 인권 기록 조사, 그리고 정치가들과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요구 결과 2005년 8월의 비상 조치령은 2010년 5월에 개정되었다. 검시를 하지 않고 시신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몇몇 끔찍한 조항들이 폐지되었

6) 조셉 페레라 (Joseph Perera) 대 법무장관 소송 판결문

http://www.lawnet.lk/docs/case_law/slr/HTML/1992SLR1V199.htm (1987년 판결). 이 소송에서는, 팜플렛이나 포스터의 배포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절대적 재량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법규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법규는 무효 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시민의 권리를 제약했기 때문이며, 금지사항과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사이에 합리적이거나 긴밀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7) 비상 (기타조항 및 권한) 법규 제01호 (sic) 2005년 8월 13일; Nissan, E. (ed.), 《Sri Lanka: State of Human Rights 2006》, Law & Society Trust, Colombo 2007, 167쪽~228쪽, 특히 196쪽~217쪽에 실린 Edirisinghe, S., 〈Emergency Rule〉의 비판을 참조할 것.

8) 비상 (테러리즘과 특정 테러 행위 방지 및 금지) 법규 제07호 2006년 12월 6일; Nissan, E. (ed.), 《Sri Lanka: State of Human Rights 2007》, Law & Society Trust, Colombo 2008, 122쪽~160쪽, 특히 127쪽~131쪽에 실린 Edirisinghe, S., 〈Emergency Rule〉 참조;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One year on: counter-terrorism sparks human rights crisis for Sri Lanka's minorities〉, 2007 12월, <http://www.minorityrights.org/?lid=4583>.

고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할 우려가 있는 인물을 예방차원에서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줄어드는 등, 느슨해진 조항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비상계엄령을 위반할 것이라 추정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 부문의 조합 활동을 더욱 심각하게 제한하는 새 조항들이 추가되었다.⁹⁾

2.2. 테러방지

테러방지[임시조치]법은 원래 1979년에 3년의 시한을 두고 발효되었고, 이 때문에 공식 명칭에 임시조치라는 말이 들어 있으나, 반대 측에서 애초에 예상한 대로 1982년 상설 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실패로 끝난 몇 번의 평화협상 도중 잠깐씩 효력이 정지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반대 측의 논평대로, '사실 이것은 보통법에 비상법제를 합치고 더욱 더 반민주적인 요소를 첨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상법으로 통치하는 군경 정권이 이 나라를 영원히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¹⁰⁾ 이 법이 표방하는 목표는 정권교체를 달성하기 위한 무력 사용 등의 테러행위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고, 주로 타밀족을 겨냥한 법이라고도 했지만, 반대 측에서 경고한 대로, 테러방지법은 '한 부류의 국민에게만, 어떤 인종이나 그 인종 안의 소수 집단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니었다.'¹¹⁾ 이 법은 싱할라족 내 반정권 성향의 시민들을 박해하는 데 악용되었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데 쓰였다. 그리고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저널리스트 J.S 티사이나야감(J. S. Tissainayagam)에게 20년형이 선고되었던 것이다. (그 후 국제적인 구명 운동이 일어나 사면되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면서도, 테러리즘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이 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죄목은 이미 대부분 보통 형사법(특히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진짜 목표는 과중한 징벌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9) <Changes to Emergency Regulations: CRM examines recent amendments>, E 01/05/2010, Civil Rights Movement of Sri Lanka, Colombo, 2010년 5월 15일.

10) Weerakoon, B. (ed.), 《Sri Lanka's New Capitalism and the Erosion of Democracy》, Ceylon Federation of Labour, Colombo 1988 에 실린 de Silva, Colvin R., <Dictatorship Tightens its Grip> (1979), 123쪽.

11) Sarath Muttetuwegama 의원 (Communist Party - Kalawana) 1982년 3월 11일의 의회 연설, Weliamuna, op. cit., 424쪽에서 재인용.

- 일부 범죄들에 무기징역을 비롯한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2절 (1)의 (a~b), 2절 (2)의 (i)와 함께 볼 것] 공공표지판 훼손 등에 최소 5년에서 20년의 징역을 선고 하며, [2절 (1)의(i), 2절 (2)의(ii)와 함께 볼 것]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몰수한다.
- 일반 형사법에서 피고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박탈하고 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영장심사를 받지 않고 72시간까지 구속할 수 있고, 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등.
- 관계 장관의 재량만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인물을 예방 목적으로 최대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 사후에라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에 소급 적용된다.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 가능하다.

굳이 강조할 것도 없이 위에 열거한 조항들과 또 그 외의 더 많은 조항들은 스리랑카가 1980년 6월에 조인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¹²⁾ 위반이며, 유엔 인권위원회¹³⁾ 등의 조약기 구들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3.0 절차적 문제: 법과 정책의 남용

스리랑카와 같이 민족 갈등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대테러 법률들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악용이 어떤 악영향을 낳는지는, 단순히 해당 법률을 독해하는 것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대테러 법률과 정책들에는 이중의 의도가 있으며, 그 중 어떤 것도 무력 분쟁의 원인은 커녕 폭력 테러에 대처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그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타밀족 사람들을 집단으로 한꺼번에 박해하는 데 쓰였고, 현 정권의 칼과 방패가 되어 정권의 평화로운 반대자들을 억누르는 수단이 되었다.

12) Ganeshalingam, S. V., <PTA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eyond The Wall》, Vol. 1, Issue 1 (2002년 6월~8월), Home for Human Rights, Colombo, 22쪽-34쪽.

13) Para.13, Sri Lanka: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CO/7/9/LKA, 2003년 12월 1일 at p. 4,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3/456/23/PDF/G0345623.pdf>

3.1 대테러 정책 및 테러 대책의 문제

스리랑카에는 1971년부터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법률, 비상 법규, 정책 결정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쌓여왔다. 그 결과 다양한 대테러 정책¹⁴⁾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두드러졌던 정책들만을 소개할 것이다. 그 중 몇은 2009년 5월에 내전이 끝난 후 효력이 정지되거나 폐지되었다.

범죄 방지 목적의 구금: 수만 명의 젊은 타밀족 남성들이 (다른 사람들도 소수 섞여 있었다) 연기된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몇 명은 강요된 자백이나 정황 증거를 근거로, 몇 년씩 수감되어 있다.¹⁵⁾ 일부 구금 장소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국제적십자위원회나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내전 막바지에서 종전 직후에 이르는 기간에만 최소 12,000명의 타밀족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종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최소 8,000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다.¹⁶⁾

고도보안구역(High Security Zone): 국가안보기구가 대규모의 농지와 어로수역을 점유했으며, 어떤 보상도 없이 주민들, 특히 북부와 동부 주민들의 거주권을 부정하고 생계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

경제봉쇄: 내전 기간 동안 내내, 특히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봉쇄로 인해 타밀 호랑이 반군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몇몇 물자들과 의약품, 식량의 부족을 겪었다.

14) 관계 토론을 읽어보려면 Manoharan, N.,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Sri Lanka: Evaluating Efficacy>, (Policy Studies 28), East-West Center Washington, Washington D.C., 2006, 특히 30쪽~38쪽 참조.

15) 국제사면위원회, <Forgotten Prisoners: Sri Lanka uses anti-terrorism laws to detain thousands>, ASA 37/001/2011, 2011년 2월, <http://www.amnesty.org/en/library/asset/ASA37/001/2011/en/64530ad7-76a6-4fb1-8f46-996c8543daf8/asa370012011en.pdf>

16)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Beyond Lawful Constraints: Sri Lanka's Mass Detention of LTTE Suspects, September 2010>, 9쪽~10쪽, <http://www.icj.org/dwn/database/BeyondLawfulConstraints-SLreport-Sept2010.pdf> Human Rights Watch, <Legal Limbo: The Uncertain Fate of Detained LTTE Suspects in Sri Lanka>, 2010년 2월, <http://www.hrw.org/en/reports/2010/02/02/legal-limbo-0>

검문소: 주요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많은 검문소가 설치되었다. 누구든, 어떤 차량이든 무작위로 정지시켜서 수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가장 많이 검문당한 것은 타밀족이었다.

경찰 등록: 북부 및 동부 지역 외에 거주하는 타밀족들은 근처의 경찰서에 신분 등록을 해야 했다. 통제선 및 수색 작전 혹은 경찰 단속이 있을 때와 검문소를 지날 때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다. 내전이 끝난 후 이 조치는 완화되었다.

강제 이주: 2007년 6월에, 376명의 타밀족이 콜롬보의 숙소에서 강제로 쫓겨나 북부 및 동부 주로 옮겨졌다. 그 중에는 노인과 병자들도 있었다. 다행히도 이 조치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고, 그 후로 정부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비밀 수용소: 내전 막바지부터 종전 직후까지, 약 30만명의 타밀족이 군부의 관리를 받는 비밀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으며, 그들에겐 이동의 자유도 외부 기관과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 보고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바깥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체포에 관련한 어떤 서류도 제시받지 못했으며, 가족들에게 그들의 행방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수용소들은 국내외의 강력한 비난이 있따르자 2009년 12월에 공개되었으며, 지금은 수용자가 몇 천 명만 남아 있다고 한다.

3.2 대테러 법과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역사적으로, 대테러 법률에 대해 또 그것이 특히 시민권, 인권, 소수자 인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사회운동가들이 다양하게 대응해 왔다. 헌법적 자유나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법조항을 자세하게 분석해 행정부나 의회를 설득해보려는 시도, 피케팅 및 시위와 노조 파업, 대법원에 제소하기, 집회와 세미나를 통한 대중 교육과 의식 제고 등이다. 이런 운동의 중요성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있었으며,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아주 드물게는 조용히 물러서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었다.

비판적 시민사회운동가들이 겪어온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시민들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싱할라족은 대테러 법률과 정책들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그 법제들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부 안보 당국자들

에 대한 면책특권, 다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타밀 죽이든 노동운동가든 언론인이든 인권옹호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싱할라 불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스리랑카의 분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비정부 인권 단체들 또한 그런 법률과 정책들의 공격과 억압에 취약하다. 인권옹호자들에게 대테러 정책에 반대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주장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시민사회운동가들과 인도주의활동가들도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 실종, 납치, 습격, 강제 구금, 투옥, 경찰 조사 등의 희생 되어왔다.

4.0 민주주의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

대테러 법률과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강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스리랑카에서 비정상적인 테러리즘을 몰아내는 데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사실은 정반대로, 타밀 호랑이 반군의 역량과 살상능력은 전쟁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강력해졌다. 테러 대책의 그물망에 걸려든 사람들 중에 정말로 테러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손으로 꼽을 만큼이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대테러 정책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 세 가지였다.

(1)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빈 껍질로 만들어 지나치게 강력해진 행정부와 억압적인 국가기구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게 만들었다. (2) 타밀족 사람들을 혈통만으로 범죄자 취급해 타밀 공동체를 사회로부터 소외시켰고¹⁷⁾, 그 결과 타밀족 자치운동, 심지어는 분리 독립 운동에 대한 지지가 결집되었다. (3)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면책을 장려하고 정당화했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다.

사법부 또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가끔씩 개별 사건에 관련해 개별법을 검토할 뿐이었다. 사실 소수종교나 소수민족 출신의 일부 소수 판사들을 제외하면 사법부 대부분의 시각 또한 대테러 공세를 지지하는 쪽이었으며, 또 전쟁 기간에는 인권 보호, 특히 ‘테러리스트’로 생각되는 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국가 안보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쪽이었다.

이미 서술한 대로, 행정부는 비상법제를 통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입법기관은 비상사태의 연장을 결정할 때 최소한의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법률을 개혁하는 역

17) Uyangoda, J., <Banning, the PTA etc.>, Daily Mirror (Colombo), 2006년 12월 9일 또한 참조할 것.

할 또한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쪽도 하지 않았다. 행정부는 당파를 초월해 대테러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회의 공감대에 기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또한 싱할라족 의원들의 민족의식 때문에 굳어진 것이다. 1972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시작해, 1978년 헌법의 원칙으로 강조된 후 일련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거듭 강화된 국가의 권력은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하찮은 존재로 축소되고 있다.

2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및 사회의 군사화 수준은 약해지지 않았다.¹⁸⁾ 군부는 민간 정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주로 북부와 동부에서 그랬지만 최근에는 국방부를 통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NGO의 등록과 도시 개발 등을 관리한다. 군부 출신이 당국의 권한 있는 자리에 임명되어 투표로 선출된 관리들을 부린다. 군사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군 기지의 규모를 키우고 더 여러 곳에 건설하고 있다. 군 출신 인사들이 경제활동에 집중되어 민간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군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의 보건 예산과 교육 예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비정상적인 비상사태가 정상인 것처럼 되었으며, 일반 법제와 비상 법제 사이의 경계선도 흐릿해졌다. 이런 현상은 특히 국가 안보 기관, 사법부, 정부 고위층의 태도와 행동에 잘 드러나 있다.

5.0 권고사항

- 범죄예방 목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위치를 공개하고 그들을 신속히 석방할 것.
-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공공안보법을 개정할 것.
- 테러방지법을 폐지할 것.
- 고도보안구역을 해제하고 압류한 땅과 어업권을 반환할 것.
- 북부와 동부 지방정부를 비군사화할 것.
-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

18) Rajasingham-Senanayake, D., <Is Post-War Sri Lanka Following the 'Military Business Model'?>,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Mumbai), Vol. XLVI, No. 14, April 2 2011, 27쪽~30쪽.

테러와의 전쟁: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아딜라 라만 칸 (Odhikar, 방글라데시)

테러와의 전쟁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을 덮친 테러 공격은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으며 결국에는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미국 정부의 초기 대응과 뒤따른 논평이 결정적이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공격을 '테러 행위'로 명명한 후,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선언했다. 이후로 부시 정권과 미국 언론은 한 가지 어구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테러리즘과의 전쟁', 혹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이 공식입장에 맞추어 수많은 글이 쓰였고 말이 쏟아졌다. 그들의 '제국주의적' 전쟁 시도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그들의 욕망과 필요에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 나라들을 응징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이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이슬람교도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그러했다.

이후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외정책에 있어 핵심 의제가 되었다. 각국은 사법기구와 안보기구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각 국가와 지역의 다양하고 오래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도매금으로 취급되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비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국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나 인권침해로 얼룩진 역사 등의 문제를 우선하지 않고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강요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는 저지를 권한을 안보조직들에 부여했다. 이런 상황은 판타나모 수용소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포로 처우 문제 외에도 다른 많은 예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 및 미국의 대외정책에 순응하도록 안보기구와 법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해당 국가들이 헌법과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자국 시민들을 문자 그대로 적대하는 상황이 되었다. 방글라데시도 예외는 아니다. 방글라데시 또한 같은 압력을 받았으며 2009년의 대테러

법은 지금까지 서술한 바 있는 국제적 상황의 직접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의 촉발

‘테러리즘’이라는 말은 국가 권력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상의 허점을 보여준다. 국가는 무언가를 ‘위협’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되고 ‘테러 행위’라고 이름붙이기만 하면 된다. ‘테러리즘’이란 말은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인권 패러다임과의 충돌 없이는 거의 정의내릴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테러’는 수천 명을 살해하면서 쉽게 가져다낼 수 있는 구실이 되어버렸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이란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폭력이나 폭력 위협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보통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를 강제하고 협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고 정의된다.

이 정의는 테러리즘과 그 밖의 폭력, 즉, 법적으로 허가되고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적 폭력 수단을 구분한다. 테러 행위는 어떤 동기에 의해 행해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정의된다. 어떤 한 집단은 여러 명분을 빌려 테러를 저지른다. 테러리즘은 폭력의 한 특정한 종류이다.²⁾

‘테러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다. 테러 대상은 그들이 이루려는 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또한 계획적으로 선택된다. 테러범들은 테러를 통해 어떤 효과를 일으키려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테러’는 즉흥적이지도 않으며 무작위로 발생하지도 않는다. 테러 행위는 두 가지 종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테러 행위,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저항이다.

9·11 테러 이후로 국제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관점에서 본 안보와 인권 문제에도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 9·11 이후로, 인권 단체 및 기타 유관 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 이루어졌다.

1) 미 육군 야전 교범 100-20, 안정 및 지원 작전(Stability and Support Operation), (최종고), “8장: 테러와의 전투.” 테러리즘 리서치 센터 (<http://www.timeenoughforlove.org/saved/TerrorismResearchCenterBasics.htm>) 참조.

2) 위의 책.

테러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시민에 대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법규가 무시당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법과 인도법상의 규범과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들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의 조작적 효과에 의해, 관점과 의견이 다른 공동체들, 사람들, 민족들과 국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인권과 개인의 자유, 민족자결권과 국가주권 같은 공통적 원칙에 기초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한 더욱 저하되었다.

미국은 9·11 이전부터 테러를 겪어 왔다 —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서 흔히 벌어져온 것처럼 일상적 공포, 일상적 현실, 또는 삶의 방식으로서 겪어온 것은 아니었다.³⁾ 두 번의 세계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테러를 상대로 승리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또 다른 ‘전쟁’, 영원히 지속되는 무한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전쟁’이라는 수사는 여러 이유로 기만적이다. 군사적으로 격퇴해야 할 적국이 없다. 물리쳐야 할 적의 제복을 입은 병사들도 없으며, 침공하고 정복해야 할 영토도 없으며, 승리를 결정하는 명확한 조건도 없다⁴⁾. ‘국제 조직범죄’와는 다른 ‘국제 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해, 군 등과의 협조 하에 법집행기관을 동원해 예상치 못한 적들을 상대로 하는 지속적인 싸움인 것이다. 그러나 알갭게도, 범죄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테러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던 알카에다는 9·11 테러에 가담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구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리즘에 이끌리는 것은 그들이 빈곤하고 억압받기 때문이며, 또한 미국이 그 빈곤과 억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⁵⁾

방글라데시의 관점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 또한 테러리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항상 경제 발전이었으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은 그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국내 법질서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3) Ramesh Thakur, <국제적 테러리즘과 유엔(International Terrorism and the United Nations)>

4) 위의 책.

5) Goska D. V., <이슬람과 테러: 9·11 이후의 소고(Islam and Terror)>, http://www.answering-islam.org/Terrorism/islam_terror.html 에서 가져옴.

미국과는 달리 방글라데시는 처음에 테러리즘을 주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법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방글라데시는 2002년에 신속심리법정법(Speedy Trial Tribunal Act)을 제정하여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 빠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기구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테러 행위에 쓰일 개연성이 있는 자금의 방글라데시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Prevention Act) 또한 2002년에 제정하였다. (2002년 법률 제 7호) 2005년 8월 17일에 과격 단체 자마툴 무자헤딘 방글라데시(Jama'atul Mujahideen Bangladesh, JMB)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적인 폭탄 테러가 일어난 후, JMB의 지도부 6명 전원이 체포되어 신속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이 주도한 4당 연립 정권하의 일이었다. 군부의 지지를 받는 과도내각 시절이었던 2007년 3월 30일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 되었다.

2008년 3월 11일에는, 과도내각에 의해 대테러법령(Anti-Terrorism Ordinance)이 공포되었다. 총선 취소 및 떠들썩했던 2007년의 반부패 운동 이후 설치된 당시 내각은, 군부의 지지를 받는 비선출 임시 정부였다. 2009년 2월 24일에는 의회가 이 법령에 기초하여 대테러법(Anti-Terrorism Act, ATA)을 제정했다. 그보다 조금 전인 2009년 2월 19일의 각료 회의에서 대테러법의 법안이 어떠한 공개 논의도 없이 발의되었다.6) '테러 행위'의 정의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해당 법률은 반정부 운동가, 교사,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들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악용되고 있다.

남아시아 대테러특별위원회

2009년 1월 28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는 9대 국회에서 가진 첫 번째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가 국내 무장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망설임 없이 취할 것이라 밝혔다.7) 총리는 '이미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배후와 자금원, 무기와 탄약의 출처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무장세력을 국가적 중대 문제로 규정했으며,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리즘

6) <국제인권연맹(FIDH)/Odhikar 방글라데시 보고서: 사형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살피본 형사사법>, 2010년 4월. <http://www.odhikar.org> 를 참조할 것.

7) Dr. K. M. A. Malik, <남아시아 대테러특별위원회 - 미국-인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방글라데시를 끌어들이는 함정>, <http://www.defence.pk/forums/strategic-geopolitical-issues/21965-south-asia-n-anti-terrorism-taskforce.html>

을 근절하겠다는 여당의 선거 공약대로 관계 기관에 '남아시아 대테러특별위원회(South Asian Anti-terrorism Taskforce, SAAT)'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무장관 디푸 모니(Dr. Dipu Moni) 또한 취임 직후에 해당 기관의 출범이 가장 중요한 우선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⁸⁾

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남아시아 대테러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무장세력 및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가 원하는 것처럼 반군을 상대로도 싸우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특별위원회가 인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디푸 모니 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기관을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인도와 역외 '우방'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방글라데시 국내와 국경 바깥에서 무장세력 및 테러리스트들과의 전투를 벌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인도는 오직 방글라데시와 인도만으로 대테러특별위원회를 설립하자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모두가 이 기관명에 '남아시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네팔, 부탄,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국가들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기관은 '인도-방글라데시 특별위원회(India-Bangladesh Taskforce)'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의 명칭에 '남아시아'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만적이며, 가짜 라벨을 붙여서 상품을 파는 행위와 같다. 이런 명명의 목적은 명백하다. 방글라데시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⁹⁾

인권단체 Odhikar는 이 특별위원회가 민족자결운동과 정권의 부조리에 저항하려는 국민들을 상대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1. 국민보호

방글라데시 헌법과 법률은 국가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존중할 책임과 해롭고 위협적인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 간 계속된 폭탄 테러에 대해, 정부 기구가 범인과 배후를 찾아내지도, 상황에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한 점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범죄

8) 《New Age》, 2009년 1월 8일.

9) Dr. K. M. A. Malik, 〈남아시아 대테러특별위원회 - 미국-인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방글라데시를 끌어들이는 함정〉, <http://www.defence.pk/forums/strategic-geopolitical-issues/21965-south-asia-n-anti-terrorism-taskforce.html>

행위로부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은 조직 체계의 미비, 부패, 법집행기관의 비효율성, 정보의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사법부 독립

방글라데시의 최고법원은 행정부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으면서 사법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문제도 겪고 있다. 하급법원의 관리들은 행정부에 속하며,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꺼린다. 경찰도 종종 여당 관련 인사들의 조사를 기피하는데, 이는 주로 경찰이 행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찰을 정치적 목적에 빈번하게 동원한다. 경찰의 부패와 기강 해이 의혹도 널리 퍼져 있다. 유감스럽게도 방글라데시가 독립국가로서 출범한 이래 쭉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3. 자유 박탈

여러 '테러 행위' 용의자들은 법정의 (구속) 허가 하에 조사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나 가족도 면회하지 못하고 진료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은밀히 취조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안전장치인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통해 불법 구금으로부터 용의자를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도 몇몇 있다.

4. 재판 문제

법원에는 많은 수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의 구치 기간이 길어 문제가 되고 있다. ODHAK에 따르면,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의 구치 기간은 평균 4년에서 7년 사이이다. 일부 수감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최장 형기보다 더 오래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려 오고 있다. 조사 과정은 느리고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며 영향력 있는 범죄자들에게 좌우되기도 한다. 경찰의 인권 침해는 대부분 처벌받지 않으며, 그 결과로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와 비사법적 살인을 종식시키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법 준수

방글라데시는 고문방지협약(CAT)을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조약의 회원국이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아직 국내에서 고문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에서는 종종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의한 고문이나 구금 중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과 다른 법집행기관들은 수많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며, 죄질이 현저하게 나쁜 경우에조차 거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경찰은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으며, Odhikar에 따르면 2010년에만 여러 법집행기관들에 의해 67명이 고문당했고 그중 22명이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고문은 위협, 폭행, 손톱 뽑기, 뼈를 부러뜨리거나 탈구시키기, 얼굴이나 몸에 뜨거운 물 붓기 등이 있으며 종종 전기충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2월 14일, 방글라데시 히즈브 우트 타리르(Hizb-ut Tahrir Bangladesh) 홍보부는 히즈브 우트 타리르의 회원들이 법집행기관들에 의해 특별위원회 취조실(Task Force Interrogation Cell, TFI Cell)에서 고문당했다는 의혹을 여러 인권 단체에 서면으로 제기하였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히즈브 우트 타리르가 2009년 10월 22일에 불법단체로 규정된 이후 다카 대학 교수 모히우딘 아흐메드(Mohiuddin Ahmed), 카지 모르셰둘 허크(Kazi Morshedul Huq), 시예드 골람 마울라(Syed Golam Mawla)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2010년 12월 22일과 2011년 1월 19일에 경찰은 더 많은 히즈브 우트 타리르 회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취조실에 '구속'한 상태로 정보를 캐기 위해 고문했다는 의혹이 있다. 체포된 사람들은 성기에 전기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발가벗겨진 채로 거꾸로 매달리거나, 얼음판 사이에서 장시간 짓눌리는 고문도 받았다.¹⁰⁾

깨끗한 마음 작전(Operation Clean Heart)

2002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규 경찰이 아니라 무장군인을 동원해 '깨끗한 마음 작전'이라는 특별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이 캠페인은 치안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군부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48명의 죽음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해당 운동 기간에 이루어진 무장군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국회가 법적인 면책을 보장해주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떠올랐다.

10) 방글라데시 히즈브 우트 타리르 홍보부가 2011년 2월 14일부로 발표한 호소문

신속대응부대(Rapid Action Battalion, RAB)

2004년, 정부는 신속대응부대라는 명칭의 특수 법집행기관을 창설했다. 이 기관은 특수 훈련을 거친 경찰과 군 출신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신식 무기와 실행기획력을 갖추고 범죄 소탕 작전을 수행할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엘리트 부대'라고 불린 이 기관은 일부 '최고 흉악범'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신속대응부대는 활동 과정에서 사람들을 고문했고 죽게 하기도 했다. 201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19명이 RAB와의 '교전' 혹은 '충돌'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¹¹⁾ 이 모든 상황들 또한 RAB의 작전 양상과 그들의 권한에 대해 인권 규범 및 인권 책임의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론

'테러(terrorism)'는 '국가에 의한 테러(state terrorism)'로는 막을 수 없으며, 매우 높은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된다. 만약 사회정치적 불균형이 시정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받는다면, '극단주의적' 방식의 불만 표출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가져야 한다. 국제 정세가 이끄는 대로 쉽사리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표면적인 현상을 억누르는 것은 전체 상황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나 반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해결책은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찬반양론을 모두 검토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방글라데시의 국내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뒤섞으려는 국제적, 지역적 세력과 언제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뛰어들 입장이 아니다.

11) Odhikar의 문서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국가안보와 평화학 연구소, 인도네시아)¹²⁾

2억 3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 85%가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인구의 이슬람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의 대다수 이슬람교도는 온건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라스카 지하드(Laskar Jihad), 라카르 준둘라(Lakar Jundullah), 제마 이슬라미야(Jamaah Islamiyah)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과격조직들이 자행한 테러행위의 희생국이 되었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훈련을 받은 대테러 경찰 특수부대(Densus 88)와 육군 특수부대(Gultor 81)를 특별 배치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부대가 사용하는 과도한 무력행사로 인해 대테러 작전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당한 기소, 자의적 체포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대테러 군사행동 도중에 용의자가 살해되는 등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은 살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새로운 정보법안이나 대테러 법률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대테러 활동에 군부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도 또한 심히 우려가 된다. 과거 군부가 자행했던 인권유린 행위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 배경

인도네시아에서 테러활동은 코만도 지하드(Komando Jihad)에 의해 가루다 항공기(Garuda Airlines) 납치사건이 발생했던 1981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승무원 1명, 군인 1명 그리고 테러리스트 3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5년에는 보로부두르

12) 저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방안보와 평화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Security and Peace Studies) 연구원이다. 기자에서 시민활동가로 전환한 그녀는 지난 3년간 안보, 국방 및 성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폭과 사건(Borobudur Bombing)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급진 이슬람교도의 모든 소요사태에 대해 수하르토 독재 정권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강경하게 대처했다.

1998년 개혁운동(Reformasi)으로 수하르토 정권이 몰락한 이후 2000년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대사관 폭탄공격,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폭탄공격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13개 도시에서 일련의 폭탄 공격이 발생하는 등 폭탄 테러가 만연했다. 2001년에는 81건의 폭탄 공격이 있었으며, 그 중 29건이 자카르타에서 발생했다.¹³⁾ 다음 해 발리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탄 폭발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03년에도 또 다른 고강도 폭탄공격이 발생했다. 메리어트 호텔에서 발생한 이 차량 폭탄 공격을 인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명 가량이 부상을 입었다.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앞에서 또 다른 차량 폭탄이 폭발했다. 이 폭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5년 발리에서는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인해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다시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 후 폭탄 공격은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중반 총선거 이후 같은 날 메리어트 호텔과 리츠칼튼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 폭탄 공격은 대테러 특수 부대(Densus 88)의 경계태세를 촉발시켰으며, 중부의 자바 솔로 지역에서 발리와 메리어트 호텔 폭탄공격의 주모자인 누르딘 모하메드 톱(Noordin M. Top)을 추적하기 위한 강도높은 작전이 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포되지 않았다. 결국 그와 다른 테러리스트 용의자 3명이 포위 공격으로 살해됐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대테러 작전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 중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2. 대테러리즘 관련 주요 법률 및 정책

9.11사태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테러리즘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제1차 발리 폭탄 공격 이후 테러리즘 범죄 근절에 관한 정부규칙(제1/2002호)이 제정되어 공표되었으며, 이 규칙은 후에 법률(제15/2003호)이 되었다. 이 법은 제정 당시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13) 수카와르니시 젤란틱(Sukawarsini Djelantik), "인도네시아의 테러리즘: 서부자바 테러리스트의 출현", 국제대학원생컨퍼런스시리즈, (하와이: 이스트웨스트센터, 2006)

이 법에 대한 주요 비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첫째, 이 법은 테러리스트와 테러행위를 형사사법제도 상 특수한 경우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대테러리즘 활동에 군과 정보기관의 개입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리즘과의 전쟁(war on terrorism)'을 과대선전한 덕분에 정치와 안보 조정장관을 임명하여 테러리즘 퇴치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정보기관(National Intelligence Body:BIN)이 대테러 작전에서 정보수집을 담당하도록 하는 대통령 지시(제5/2002호)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비사법기관이 체포와 구금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했다.

둘째, 형법이 테러리즘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제도(complaint mechanism)를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한 근거를 갖지 않는 체포, 구금, 수색 또는 압수와 관련한 보상이나 복권 요구를 포함하여 사전심리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자기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법률 제20조에서 "조사관, 검사, 변호사 그리고/또는 판사를 대상으로 위협(intimidation)을 행하는 자는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위협'이라는 모호한 규정은 테러리즘에 관한 법적 절차가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 언론이나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정보기관의 보고서만을 토대로 도청이나 은행계좌조회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게 하고,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정보기관은 어떠한 주법(state law)의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집권세력에 의해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테러리즘 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은 수차례 개정되었다. 2003년과 2004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도 정부가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3. 절차: 대테러리즘 법률과 정책의 남용 및 시민사회의 대응

인권 존중에 기초하지 않은 규제는 시행 상의 문제를 초래했다. 아래는 2000-2001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테러리즘 작전 사례들이다.

a) 대테러리즘 조치의 문제점

2000년 이래 인도네시아의 특수부대(Densus 88)는 대규모 대테러 작전들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들 작전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발리(Bali)와 메리어트(Marriott) 1차 & 2차 사례

발리와 메리어트 호텔 폭탄 공격에 대한 수색 및 체포 작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 작전의 문제는 몇몇 테러리스트의 부인이 함께 체포되었고, 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수 차례 체포 시도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살해되었다는 데 있다. (2005년 11월 아즈나리(Aznari), 2010년 3월 둘마틴(Dulmatin), 2009년 이브로힘(Ibrohim)과 누루딘 모하메드 톱이 다른 5명과 함께 살해됨)

2006-2007년 중부 술라웨시 포소(Poso, Central Sulawesi)에서의 법집행 사례

분쟁 취약지역인 포소에서 법집행 상의 사건은 3차례 있었다. 가장 큰 사건은 경찰이 용의자를 계속 추적했었던 2007년 1월말에 발생했다. 이 작전은 과도한 무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 1명, 미성년의 소년 3명 그리고 경찰이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11명 등 총 15명이 사망했다.

아체주 잘린(Jalin, Ache) 산악지역에서의 포위작전

2010년 초, 테러리스트 훈련소가 위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잘린 산악지역에서 포위작전이 실시되었다. 전투 없이 3명이 체포되었으나, 민간인 3명이 총에 맞았으며 그 중 한 명은 사망했다. 3월에 경찰은 아체주 일부 지역에서 포위공격을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1명이 총상을 입었다. 그리고 48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1명은 부당하게 기소를 당했다.

서부자바 카왕, 자카르타, 치캄펙(Cawang, Jakarta, Cikampek, West Java)에서의 포위작전

2010년 5월 카왕에서 포위작전이 실시되었으며 테러리스트 용의자 3명이 살해되었다. 이 작전은 치캄펙에서도 지속되었으며, 테러리스트 용의자 2명이 살해되고 1명이 생포되었다. 이들의 신원은 작전이 있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조사 이후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였으나 모두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매장되고 난 후에도 카왕에서 살해된 2명의 신원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이들에게 사격을 가한 경찰조차도 모르고 있다.

북부수마트라 메단(Medan, North Sumatra)에서 발생한 CIMB 니아가 은행(CIMB Niaga Bank) 강도 및 경찰서 공격 사건

2010년 메단에서는 경찰이 테러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행한 것이라고 믿는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서 한 곳이 테러리스트 용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후 일련의 강력한 대테러 작전이 수행되었다. 이 작전에 따라, 18명이 체포되고 6명이 총에 맞았으며, 1명이 위협을 당하고 10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작전에서는 거짓으로 혐의를 씌우고 목표대상을 잘못 잡는 일이 있었다.

서부자바 치레본(Cirebon)경찰본부에 있는 모스크에서의 우편폭탄과 자살폭탄 조사 사례

경찰 본부 내 모스크에서 2011년 3월 우편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2011년 4월 15일에는 자살폭탄 공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테러조직 색출을 위한 대테러 수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이미 몇몇 사람이 강도 높은 심문을 받기 위해 체포되었으며, 국방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의 대테러리즘 단장은 여전히 수십 명의 체포 용의자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00-2010년,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한 범집행 사례

조치	인원수
체포된 테러리스트 용의자	1,040명 (2009-2010년 444명)
체포되어 재판 받은 테러리스트 용의자	953명 (2000-2009년 420명)
대테러 작전에서 살해된 테러리스트 용의자	87명 (2000-2009년 24명)
구금 기간을 마치고 풀려난 테러리스트 용의자	210명 (2005-2010년만 해당)
감형 받은 테러리스트 용의자	53명 (2005-2010년만 해당)

출처: KontraS 감시 및 문서관리국

b) 대테러리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도전과제 및 성과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CSO)와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대테러 활동에 직면하여 몇 가지 활동을 전개했다. 테러리즘 법에 대응하여, 공정한인권모니터(Imparsial Human Rights Monitor)를 간사단체로 하여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자유연합(Coalition for Civil Liberties)을 2002년에 결성하였다. 시민자유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몇몇 책자를 발간하고 캠페인을 벌여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한 대테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중 하나가 국방안보와 평화연구소(Defense Security and Peace Studies:IDSPS)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또 다른 활동 분야로는 피해자 옹호 활동을 들 수 있으며, 실종자 및 폭력 희생자를 위한 위원회(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 of Violence: kontraS)와 미시아라카트 지역법률구조협회(Community Legal Aid Institute:LBH Masyarakat),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YLBHI)과 같은 법률지원기구에서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경찰이 행한 권력남용을 신고하는 곳이 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신고된 피해자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 책임과 복권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복권 요구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시민사회단체는 굳건히 연대하여 공공정보접근연합(Coalition of Access to Public Information)을 결성했다. 이 연대체는 문제가 많은 국가기밀법 초안을 발표하려던 정부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대테러 작전 사실을 국가 기밀로 은폐하고 언론을 침묵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1998년 이래 성공적으로 정착된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계속된 반대활동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통해, 법안이 합법화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와 의회는 정보법안을 2011년 7월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안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보법안이 ('집중적 심문'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밤낮 없이 수시로 이뤄지는 체포 및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당국의 도청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은 다시 한번 연대하여 정보법안반대연합(Coalition on Intelligence Bill Advocacy)을 결성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로비활동을 벌이고,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나,

정부는 최근 발생한 우편폭탄과 자살폭탄 사건을 근거로 여전히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논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악법의 제정을 저지시킨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a. 정부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약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개혁에 성공하고 발전해 온 모습을 세계가 목도한 이래 13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시민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권력은 강화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힘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위험하다.

b. 시민사회운동이 분산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한편 시민사회 단체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시민단체 활동간에는 조율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취한 대테러리즘 조치에 직면하여, 한 단체는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다른 단체는 법집행 기관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며, 또 다른 단체는 희생자의 편에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

c. 정부와 국회가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법률조약에 서명, 비준하도록 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및 강제실종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d.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법집행기관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옹호자에게 오명을 씌우고 있다. 정부는 대테러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한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4. 부정적 효과

앞 부분에서 정부가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표를 통해 보았다. 이 표는 단순히 정량적 수치만을 보여주고 용의자들에게 가해진 권력남용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들 수치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접근 가능하게 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하지만, 대테러 정보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용의자에게 행한 절차나 사상자 수치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용의자가 공격할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격이 가해지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행위를 하는 등 대테러 작전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경찰이 체포하는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숫자가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규제와 법을 개정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면, 테러리즘 법과 대테러리즘 작전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비판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약화나 오명 씌우기와 더불어 이 문제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존중되고,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대중의 목소리가 선거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만 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5. 권고사항

국민을 위해 강력한 대테러리즘 규제와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단지 강력한 무력만 사용한다면 대테러리즘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당하게 테러리스트로 비난 받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보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테러리스트를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열망을 분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대학과 학교에서 공개토론을 장려하고, 청문회를 열며, 대중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 정부는 잘못된 기소나 고문과 같은 학대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대테러 작전 희생자들의 진정(appeal)을 심리하고, 조사하며, 잘못된 점이 입증되면 법을 집행한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하며, 경찰 채용 시 신원조사 절차를 부과하고, 희생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문제는 대테러 작전에서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들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면책문화가 여전히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 국제사회는 대테러 작전에서의 불법행위와 희생자의 진정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국제사회는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 국제사회는 국가에 의한 대테러 작전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 대테러 작전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대중의 정보 접근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인권과 안보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말레이시아

옹진청 (SUARAM, 말레이시아)

1. 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해방 운동의 물결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는 식민주의자들이 자국에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독립을 선언했다. 말레이시아 또한 독립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1946년 식민정부는 말레이 반도를 영국 식민통치 하에 두고자 말레이연방(Malaya Union) 개념을 들고 나왔다.

모든 민족집단의 사람들이 식민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동맹휴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식민정부는 1948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많은 단체를 불법단체로 선언했으며, 독립투사들의 체포와 살해가 시작되었다. 비상사태는 실제로 영국이 독립투쟁 단체를 말살하고 말레이반도 내에서 영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영국 정부는 새로운 마을로 사람들을 재이주시켰다. 신생 마을은 실제로 임시수용소였다. 사람들은 강제로 새로운 마을로 이사해야 했고, 커다란 솥으로 음식 준비를 하는 등 식량 통제를 받았으며, 오전 6시 이후에나 밖에 나가서 오후 7시 이전에 돌아와야 했고, 또 신생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검문소를 오고 갈 때 엄격한 검문을 받는 등 감시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말레이반도에서 비상사태가 종료된 다음 날인 1960년 8월 1일 국가보안법(ISA)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기본적으로 비상상황을 더욱 지속시키고 국민의 민주운동을 억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는 1963년 9월 16일 (오늘날 말레이시아 반도로 칭하는) 말레이반도, 사라왁, 사바 및 싱가포르의 연합으로 설립되었다. 싱가포르는 1965년 10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되었다. 그 전에 말레이시아 반도는 말레이반도로 알려졌다. 말레이반도는 비상사태 하에 있던 1957년 10월 31일 독립되었다.

2. 주요 대테러 법률 및 정책

말레이연방 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을 때, 제안 목적은 공산주의 운동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운동은 그 당시 테러리즘으로 규정되었다. 1989년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말레이시아로 되돌아간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말레이시아에서 법으로 남았다.

지난 51년간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 종교지도자, 정치인, 중국 교육 활동가, 중국인교육운동가? 및 시민사회 구성원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재판 없이 27년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항상 집권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어왔다.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면 언제나 국가보안법이 사용되었다.

1960년대 국가보안법은 전선(front) 사회주의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1970년대는 학생운동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다. 1980년대 집권연합 통일말레이민족기구(UMNO)의 주요 정당이 마하티르와 탕쿠 라잘레이 사이에서 내부 위기를 겪었을 때 오페라시 랄랑(Operasi Lalang) 하에서 중국어교육 활동가, 빠스(PAS) 활동가, 종교지도자, 환경운동가와 같은 인권운동가, 원주민운동 지도자, 부킷메라의 원자력 반대 활동가 및 강간반대 캠페인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다. 1998-2001년에는 개혁운동 참여자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다. 2007년에는 힌두권리행동대(Hindu Rights Action Force, HINDRAF) 활동가들과 시위자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다. 힌두권리행동대는 거의 30,000명의 인원을 시위에 동원했다.

9.11 사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매우 편리한 비민주적 통제 수단이자 국가테러 수단인 국가보안법의 사용을 연장하는 데 손쉬운 핑계거리를 제공했다.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PAS의 영적 지도자 닉 아지즈의 아들 닉 아들리를 포함하여 많은 이슬람 지

도자와 신도들 또한 말레이시아 무자헤딘 그룹(KMM), 제마 이슬라미아(JI) 및 다룰 이슬람(DI) 같은 호전적 종교단체 용의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2008년에 체포가 연장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구금자 일부는 수차례 구금이 연장되었으며, 재판 없이 거의 8년 간 구금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는 석방되었음에도 여전히 거주에 제한을 받고 있다. 201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소위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국제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으며 '색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0년부터 대략 10 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연계된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학생이며 외국인이다. 이들은 재판 또는 심지어 변호사와의 접촉기회도 없이 자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3. 절차: 대테러 법률과 정책의 남용 및 시민사회활동

a) 대테러 조치와 정책의 문제점

- 많은 사람들이 60일의 구금 및 조사 기간 동안 경찰 및 특별부서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
-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금자들은 재판 권리를 빼앗긴 채, 제8 항에 의해 임시수용소로 보내진다. 이들은 구금과 조사/심문 기간 동안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60일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폐락 타이팅 지역에 있는 카문팅 임시수용소로 보내진다.
- 국가보안법은 정치인, 야당, 공무원, 시민사회 지도자, 노조원 등 집권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정치적 수단이 되어 왔다.

b) 대테러 조치/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CSO)의 대응: 도전과제와 성과

- 말레이시아에서 국가보안법은 항상 시민사회단체의 폐지운동 대상이 되어 왔다. 사실 말레이시아 민중의 목소리(SUARAM)는 '오페라시 랄랑 Operasi Lalang' 이후 국가보안법의 폐지 활동을 위해 1989년에 결성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22년간 SUARAM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캠페인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

고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001년 이래 말레이시아에서 SUARAM과 야권 정당들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AIM)은 대중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의 잔인성을 강조해 왔다.
- 말레이시아의 사회시민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집권연합의 테러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구체적 목적은 인권옹호자, 사회운동가 및 야당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금 하에서 행해진 고문 사례들은 문서화되고 주목받아왔다. 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 많은 구금자들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10년까지 정당한 재판 없이 구금된 테러리스트 혐의자 대부분이 석방되었다.

c) 사례

- 1999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서 실천한 활동은 자동차 스티커 인쇄 및 배포, 국가보안법에 의한 과거 구금자 803명이 모든 정당에 제출한 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40년간의 국가보안법”(Koh Swe Yong)와 “철창 안에서의 445 일”(Koh Swe Yong) 등 2권의 책 출간을 포함한다.
- 시민사회단체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GMI)는 사리 송입(Saari Sungib)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금에서 석방된 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반대 이슬람 운동을 강조하는 책 시리즈를 출판했다. 2009년 GMI는 또한 국가보안법이 이슬람 입장을 보호한다고 언급한 PEWARIS로 불리는 이슬람단체 연합과의 토론에 사리 송입을 초대했다. 물론, PEWARIS 측에서 사리 송입과 토론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2008년 GMI는 거의 6년 동안 체포 상태에 있던 구금자들의 기간의 최대 8년까지 2년 더 연장되는 것을 저지하고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우편엽서 보내기서 명캠페인을 벌였다. 30,000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한 구금자의 부인은 적극적으로 남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잔인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부인과 자녀들은 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언제 풀려날 지 알 수 없었다.

4. 결과

2009년 8월 1일 대규모 시위에서 50,000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참여했다. 정부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압박을 받았다.

시위 이후 정부는 구금 및 조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초기 약속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연기되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편, 정부는 카문팅 임시수용소를 개보수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테러리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학생의 체포를 지속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정부는 대테러 명분 하에 국가보안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권고사항

테러리즘을 재정의해야 한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쓰여진다. 공산주의자에서 오늘날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이들 공산주의자와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고 다양한 문화, 정치이념, 종교,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및 세계에서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하는 모든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테러리스트 활동 혹은 호전 활동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재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빼앗을 수 없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한다. 평화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무죄추정의 근본원칙을 망각한 테러와의 전쟁은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무력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과 절대적인 야만적 행위는 영원히 중단되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필리핀

마리아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인터내셔널 다이얼로그 이니셔티브, 필리핀)

2008년 이맘때쯤 다바오시에서,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IID)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대(對)테러리즘과 개발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와 협력 관계에 있는 네덜란드 가톨릭구호개발원조기구(Catholic Organiz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Aid Netherlands, CORDAID Netherlands)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들간의 토론회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행사였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모인 평화 및 개발 시민단체 회원들과 민중 조직, 인권 단체와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모두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이 미친 영향과 부작용을 체감했다는 지점에 도달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11 전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더 큰 목소리로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일에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대테러리즘 조치와 평화와 개발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일련의 기획 중 하나였습니다. 9/11 이래로 범세계적 테러와의 전쟁 추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대테러 조치를 포함한 안보 담론이 세계 담론을 독점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으로도 이를 최우선사항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비단 필리핀에서뿐만 아니라 그 직접적인 결과로 개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정치적 공간이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명분과 국제자원 지원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정치, 정책, 정보 및 군사 수단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시민자유권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한 컨퍼런스에서의 토론 결과와 일부 국가안보 및 인간안보에의 위협이 야기하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단체의 평화와 안보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최근 발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 IID의 경험과 민다나오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은 우리의 연대 및 지지 활동과 관

런 있는 경우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인 IID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ID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에 본부가 있고, 지역 단체이자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평화구축, 갈등예방, 인간안보, 자결권, 민주화 등을 기조로 민중간 연대를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본부가 있는 민다나오 섬 이외에도 버마, 아체, 西 파푸아뉴기니, 태국 남부, 동티모르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역 차원 (특히 민다나오), 필리핀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 정책 결정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갈등예방 메커니즘을 위해 로비활동을 해온 동 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한 역내 차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IID는 특히 평화구축과 갈등예방 그리고 민주화와 인간 안보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 그 중에서도 풀뿌리 운동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보호의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도법(IHL)과 같은 인권과 인간안보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그리고 유엔국내난민원칙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UNGPID), 유엔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 Defenders)과 같은 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조약, 규범, 수단의 이행을 주창하는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위한 활동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표 주제인 필리핀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역내에서 일부 국가들이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주장에 맞닥뜨리고 분쟁 상황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해왔는지 목도하였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역내 군사화와 미군의 영향력 팽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예전 부시 정부가 대테러 전쟁의 “제2의 전선”이라 지목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당시 미국은 테러리스트 훈련 시설이 있는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나 서사하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다나오 섬을 여러 테러 집단과 테러 목표가 위치한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 역내 여러 국가들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테러리즘 분석가들은 이 섬이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다나오 섬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관해서는 현 오바마 정부도 아직까지 부시 시절과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안보작전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對테러과 對반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무장갈등에 위협한 함의를 지닙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아시아 보고서 152호, 2008년 5월 14일, 〈필리핀: 민다나오의 반군 대책과 테러 대책〉)

크록국제평화연구소(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의 조지 로페즈(George Lopez) 교수가 대(對)테러리즘과 개발에 대한 컨퍼런스(필리핀 다바오시, 2008년 5월 25일~28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세계적 대테러 전쟁은 현실에서는 반군 대책이라는 문제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미 국방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테러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부 국민 및 반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페즈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의 경험을 인용하며, 그 경험으로부터 미군이 도출한 것은 '자신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라크 인구의 겨우 1%이지만, 50% 이상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테러조치 컨퍼런스 기록, CTM Conference Proceedings)

그 말을 듣고 반군이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의 상황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여러 반군 세력 간의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對테러 조치와 對반군 조치가 뒤섞이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반군과의 분쟁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리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고안해야 하며, 모로국민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과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및 공산주의 반군인 필리핀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of the Philippines) 등과 같은 주요 반군세력들과 평화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넓으면서도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위키피디아를 검색해 보았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꿔 말하면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해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러 법적 체계 및 정부들은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제사회는 여전히 포괄적, 보편적 합의와 법적 구속력 있는 테러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논란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반(反)테러법 혹은 반테러리즘법으로 불리는 공화국 법률 9372호를 통과시켰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름은 인간안보법(Human Security Act, 2007)이다. 이 법의 3절을 보면 테러리즘은 '정부가 불법적인 요구에 굴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개정 형법의 어떤 조항에라도 위반되는 행위를 범하고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공포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촉발하거나 조장하는 자는 테러범죄에 해당하며 가석방 없이 40년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 행위의 정의는 해적에서부터 살인, 납치, 마약 범죄,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에 이르기까지 너무 광범위합니다.1)

인권옹호론자들에게 부여한 타협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법률에 경찰관 및 법집행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있으며 (18절 및 22절) 수사 및 심문에 있어 고문 및 강압을 금지하는 조항(24절)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간안보법이 심의단계에 있을 때나 결국 통과된 후에도, 시민사회단체와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대체로 비판적으로 의혹과 불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부시 정부의 대테러 담론에 간단히 굴복하는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소위 '민다나오 모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對테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對반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작전은 아부 사야프 반군(Abu Sayyaf Group, ASG)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 아부 사야프 반군은 일반적으로 테러 집단으로 분류되며, 공식 명칭이 '알 하라카툴 이슬라미야 (Al-Harakatul Islamiyya)'인 만큼 이슬람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2)

1) 일반 해적행위와 공해 및 필리핀 영해상에서의 선상 반란 (122조), 반란 및 폭동 (134조), 사인(私人)에 의한 것을 포함한 쿠데타 행위 (134조), 살인 (248조), 납치와 중대 불법 구금 (267조), 파괴 범죄 (324조). 방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1613호), 1990년 독극물 및 유해 폐기물, 핵폐기물 관리법 (공화국 법률 6969호). 1968년 원자력 규제 및 책임에 관한 법률 (공화국 법률 5207호). 항공기 납치 방지법 (공화국 법률 6235호). 1974년 해적 및 고속도로 강도행위 방지법 (대통령령 532호). 화기 및 탄약, 폭발물의 불법 소지, 제작, 판매,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법률 수립에 관한 법령 (대통령령 1866호).

2) 호주 학자인 Kit Collier는 ASG 관계 문헌을 연구한 후 이렇게 서술했다(Collier,2004). 그들은 '국제 테러조직'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이슬람 도적단', '사회 도적단', '정치 목적이 있는 무법자들' (Frake, 1998) 혹은 '신진 폭력 사업가들로 저항적이지도 혁명적이지도 않다'거나 (Gutierrez, 2000),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혁명 집단' (Quimpo, 1999), '모로국민해방전선이나 모로이슬람해방전선, 심지어는 필리핀 국군의 분파 또는 위장된 분파일 수 있으며 CIA의 창조물일 수도 있다'(Iqbal, 2003)고 묘사된다. 《의도적으로 준비된: 필리핀의 무장단체와 인간안보를 위한 움직임》.

미국의 범세계적 대테러전 작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이 필리핀으로 확대되면서 민다나오 섬에서의 아부 사야프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부 사야프와 싸우는 필리핀군을 '지도 및 지원'하도록 미 태평양 특수작전사령부(Special Operations Command Pacific) 소속 군인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

사실 미국이 필리핀 정부와 맺은 방문군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이 1999년 5월부터 발효 중이기 때문에, 미군 파병은 공식적으로는 명분이 있습니다. 파견된 병력 규모는 660명이었던 것이 '발리카탄 02-1 연습(Exercise Balikatan 02-1) 하에 2008년에는 1,2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필리핀군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아부 사야프가 장악한 지역에서 도로와 교량, 학교 건설 및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통한 민심 획득과 같은 더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

미군 병력이 필리핀군과 함께 순찰 및 전투 작전을 수행했다는 보고가 있어 왔습니다. 술루에서는 미군이 개입한 아부 사야프를 상대로 작전을 벌이던 도중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방 평화운동가들과 언론인들이 벌인 휴전협정 준수 감시활동 과정에서 미군 병력이 민다나오 중부지역에서 필리핀군과 공동으로 모로이슬람해방전선에서 떨어져 나온 과격분자로 추정되는 적들을 추적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국 및 지역 평화운동단체들에 의해 방문군지위협정(VFA) 위반 사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군 병사가 지역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된 사례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문군지위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2010년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현 정권은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절차를 재개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화회담을 계속하고 다양한 관련 조치 및 관련 기구를 설치하거나 시행,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제감시단(International Monitoring Team, 말레이시아 주도)과 해당 기구의 민간인보호분과 및 지방감시단,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합동조율위원회(Joint Coordinating Committee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JCCCH)를 비롯한 휴전협정 관계 기구 외에도,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은 임시공동조치단(Ad Hoc Joint Action Group, AHJDG)을 재가동시켜 테러집단과 범죄분자를 추적하고, 이들을 모로이슬람해방전선에서 단절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다나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특히 해방전선 측 지역에서의) 반군 내 범죄 분자 소탕이라는 양측의 공통 목표를 위해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사이의 협력과 협동을 증진시킬 효과적인 조치로 반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족민주전선(NDFP)은 여전히 테러집단 목록에 올라 있는 반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평화위원회장과 민족민주전선(NDF)은 공개 석상에서 이 단체가 테러집단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임시공동조치단(AHJAG)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지역에서 아부 사야프와 펜타곤 갱(Pentagon Gang, 몸값을 노리는 납치 집단) 등을 상대로 벌인 작전 중에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동조치단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소속 극단주의자들을 억제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보분야개혁에 다부문(multi-sectoral) 단체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고, 실제로 참여하기도 하면서 해당 분야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 및 참여,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업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적 공간과 인권, 개발, 남녀노소의 소중한 생명이 대테러전이라는 명분하에 부당하게 희생되며, 특히 국내에서 수많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형이 벌어져 유엔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던 시간을 우리는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지역 공동체, 단체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시간도 견뎌냈고, 전복세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견뎌냈으며, 많은 정부 관리들이 운동가들과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는 것도 견뎌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주권과 영토보전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편협한 국내 안보 체제와 안보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을 옹호하고 만인을 위한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IID는 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분야개혁과 평화 정착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의 휴전협정과 필리핀 민족민주전선(NDFP)과의 인권 및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포괄적 협약(CARHRIHL) 등의 협정 준수 감시활동, 전국적 평화 지지 기반 구축, 정보전달 및 교육 캠페인, 연수 및 워크숍 개최, 평화 의제 구축, 또 대립하는 여러 정당 및 안보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최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다나오 시민 평화아젠다(Mindanao People's Peace Agenda, MPPA)를 마련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하기 위한 필리핀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수립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률 부문의 또 하나의 성과는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 및 인종학살 등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률(공화국 법률 9851호, 2009)'입니다. 그리고 정보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인종 및 종교 차별 금지법, 국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 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개념의 구성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환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 여러 진보적인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수사에 그치고 말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문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 안보 개념에서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 개념으로 방향을 틀어 새로운 평화 안보 체제를 현장에서의 안보세력들이 얼마나 잘 내면화하고 본보기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점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내의 지지세력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필리핀 정치의 특이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사회운동을 하던 인사들 중 정부 쪽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관료사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정부 내 역학 관계와 관료사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중계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확고하게 원칙을 지키고, 감시할 것은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는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우리의 논의에 새로운 차원을 덧붙여볼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성과 평화와 안보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무장갈등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여성과 아동이며, 점점 더 전투원들과 무장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10월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안 1325호는 무장갈등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평화 정착 및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보와 민주주의 담론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바탕을 둔 안보, 그리고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 여성이 변함없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태국

아차폰 니미쿨폰 (평화를 위한 정의재단, 태국)

태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평화적 방법을 선택했지만, 남부 지역의 반군단체처럼 일부는 폭력적 방법을 통해 태국 정부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태국 정부가 시행하는 주변화 및 차별로 인한 직접적인 경험이 이러한 움직임의 근간에 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몇몇 사례의 경우 직접적 불만의 목소리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증용되고 있다.

태국은 반대세력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9/11 이전에는 태국 정부는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에 '국가안보' 위협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대처했었다. 2004년 태국 남부 국경지방에서 새로운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때에도 태국정부는 이를 '반란' 문제로 다뤘다.

9/11 이후 태국 정부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테러 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03년 부시 대통령과 탁신 총리는 테러리즘 퇴치를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테러와의 전쟁에서 최근 동향을 논의했고, 역내 테러범 위협 저지 및 제거에 있어 조력해 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내 협력강화를 환영했다. 그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토안전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원칙 선언문'에 서명하기로 한 계획도 환영했다.¹⁾

태국은 또한 폭탄테러행위억제 국제협약(1998), 테러자금조달억제 국제협약(1999), 형

1) 미육군전쟁대학 전략 연구 프로젝트, "테러리즘, 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정책", 저자: 캣차이 관수완 태국육군 대령, 2004.

법 조항 등 수많은 대테러 법령을 비준하고 시행했다. 또한 계엄법(1914), 긴급조치(2005), 국내보안법(2009), 컴퓨터범죄법(2007) 등 4개의 다른 안보 관련법도 제정했다. 이 법률들로 인해 모든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에 의한 초법적 행위가 가능해졌으며, 수많은 심각한 인권 남용 및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안보 보호 정책, 테러리즘/반란 대응방침 하에 태국 내, 특히 남북 지역,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보수집, 처벌 및 입막음을 위해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특히 인터넷 검열 및 저널리스트와 웹사이트 운영자 기소,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구금, 지나친 무력사용, 가장 극단적인 경우 고문, 납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 등이 있다. 2004년 이래 태국 남부지역에서는 4,370명이 사망하고 7,136명이 부상을 입는 등 폭력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은 안보 차원의 국가 대응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반드시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면책을 명시한 법률, 정치화되고 때때로 취약한 형사사법제도(경찰, 특별조사부, 사법부 포함) 및 관련된 정치적 의지 부족은 폭행(고문)과 살인(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지휘체계를 통한 책임을 져야 하는 ‘안보관료’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태국의 여러 정부기관들은 시위활동에 대해 불필요하고 지나친 무력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예로 2002년 12월 태국-말레이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가스추출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시위 진압³⁾, 2004년 10월 탁바이에서의 시위 진압, 2010년 4월과 5월의 ‘레드셔츠’ 시위대 해산 등을 들 수 있다. 경찰과 보안군은 안보작전 시 무력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예로 2003년 마약과의 전쟁, 2004년 4월 28일 태국 남부에서 발생한 사건들(크루에 세 회교사원 학살을 포함)을 들 수 있다. 탁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지속된 3개월 동안 2,800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도 안보관료가 기소된 경우는 없었다. 태국사회에서 협상과 논의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커지고 있다. 언론의

2) 방콕비즈니스뉴스, “남부지역 분쟁 해결에 1.45조 바트 사용”, <http://www.bangkokbiznews.com>

3) 지역 주민의 환경수준, 복지 및 생활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 허가와 관련하여 핫야이(Hat Yai)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이뤄졌다.

자유(특히 온라인 매체)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수만 개의 URL이 2007년 신(新)컴퓨터 범죄법과 제엄령과 비상사태해결센터(CRES)에 의해 차단되었다. 적어도 1명의 온라인 저널리스트와 1명의 웹사이트 운영자가 왕족모욕과 관련해 컴퓨터범죄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기소된 상태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2명의 외국인 저널리스트가 2010년 5월 방콕에서 발생한 시위를 취재하던 중에 총에 맞아 사망했고, 전국적으로 반정부세력과 연관된 100개 이상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되었다. 남부지역 저널리스트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협박과 위협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인권 활동가들도 유사한 위협과 위법행위에 직면해 있다.

안보 관련법들은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2010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레드셔츠' 시위 기간과 시위대의 폭력적 해산 이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일부는 비상조치에 따라 자의적 구금과 다름없는 기소 없이 구금을 당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형법 위반을 사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엘로우셔츠' 시위자들 또한 구금되었으며 동일한 법에 의해 기소되었다. 남부지역에서는 7,680명의 마을주민이 체포되었으나 단지 1,500명만이 관련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⁴⁾ 대다수의 경우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기소가 기각되었다. 사법부가 이들 사건들을 매우 더디게 진행시킨다는 점, 보석 허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우려스럽다. 인권단체들은 안보 관련법들 하에 억류된 구금자들이, 특히 남부지역 구치소에서, 부당한 대우와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다. 구금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부재한 법률에 의해 억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태국 보안군들은 법의 영역 밖에서의 수단으로 납치를 한다. 태국 내 납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Justice for Peace Foundation은 1991년 2010년 사이 발생한 90건 이상의 사례를 수집했고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고산족 주민, 말레이 무슬림, 인권 및 환경 활동가, 민주화 활동가 및 반부패 지도자 등 전국에 걸쳐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납치라는 수단이 이용됐다는 것이 폭로됐다. 강제 또는 비자발적 납치에 관한 유엔실무그룹(WGIED)은 저명한 인권변호사 솜차이 날라파이짓(Somchai Neelapaijit) 사례를 포함하여 55건의 태국 사례를 인정했다.⁵⁾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모든 사례에서 실종자 또는 실종자 유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4) 방콕포스트, 사니츄다 에카차이의 오피니언 칼럼, "남부에서의 조용한 죽음", 2011년 2월 17일.

5) 유엔문서 A/HRC/13/31, 113페이지.

“국가 안보 및 대테러/반란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된 조치들과 법령들은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불법행위와 지나친 무력사용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안보 관련법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집행 관료들에게 면책조항을 제공한다.

중국의 인권변호사와 법치

패트릭 폰 (중국인권변호단체, 홍콩)

국가의 법치를 유지하는데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변호사, 특히 형사사건 변호사(그 중에서도 인권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상시적인 탄압의 대상이다. 변호사와 일부 법률 운동가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어 왔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인권운동가, 지방정부 관리와 유착한 개발업자에게 불법으로 땅을 빼앗긴 사람, 중국 정부가 '악의 숭배'라며 불법화한 파룬궁과 개신교도 등 박해 받는 종교인을 변호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가와 중국의 인권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호사와 법률 운동가들을 통상 '인권변호사[중국어로 웨이추안 을브쉬(weiquan lvshi), 維權律師]'라고 부른다. 아시아와 전 세계의 법조계, 시민사회,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 '인권변호사'의 관심 영역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행해지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한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점차 인정되는 현실이 놀랍다. 많은 '인권변호사'들이 여러 형태의 고초를 겪었고, 그 중 일부의 상황은 특히 놀라울 정도이다

국제적으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끄는 가장 심각한 경우는 베이징 지역 인권변호사가오 지성(Gao Zhisheng, 高智晟)의 사례로, 그는 두 번이나 실종되었었고 현재도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가오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정부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공개적인 지지 때문에, 그의 변호사 자격은 정지되었고 그가 속한 법률회사도 영업을 정지당했다. 2006년 12월 그는 비공개 재판에서 소위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와 그의 가족은 이후 자택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그는 가족 앞에서 공안의 부당한 대우와 욕설을 들어야 했고, 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한 사고를 당했다. 당시 12살이었던 그의 딸도 학교에서 시달림

을 당했다. 2008년 9월 그는 눈을 가린 채 불상의 장소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2009년 2월에는 집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끌려간 뒤 사라졌다. 그는 1년 후인 2010년 3월말에 잠깐 돌아와 다음달인 4월 중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처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실종되었다. 현재 그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부인과 두 아이는 미국에 망명 중이다. 2011년 1월 AP통신은 2010년 4월초 가오가 돌아온 지 며칠 뒤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그는 다시 고문을 당했고, 지난번 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가오의 현 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당국의 가오에 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 등 중국 국내법과 중국이 서명/비준한 국제 규약 즉,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중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음)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중국정부가 서명하고 비준) 등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다. 그 외에도 이들 법규에 위배되는 다수의 변호사와 법률 운동가에 대한 탄압 사례가 있다.

중국 북동부 산둥성의 장님 법률운동가 천광청(Chen Guangcheng, 陳光誠)은 지역 주민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인구억제 정책(소위 '1자녀 정책')을 위하여 지방 관리들이 추진한 강제 낙태관행을 폭로하였다. 그는 2006년 8월 '재산 손괴'라는 조작된 죄목과 마을 열차 선로에 주민들을 규합하여 누웠다는 '주민을 동원한 교통 방해 죄'로 징역 4년 3월을 선고 받았다. 2010년 9월 석방된 후, 그와 그의 가족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이다. 그와 그의 부인은 그들이 고향집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비디오가 친구를 통해 공개된 후인 2011년 2월에 구타를 당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법률 운동가인 귀페이시옹(Guo Feixiong, 郭飛雄)은 광둥성 판유의 타이시 마을에서 주민에게 법률 지원활동을 한 뒤, 2007년 11월 '불법 사업 운영'이라는 조작된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001년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선양의 한 고위 관리의 뇌물 스캔들에 관한 책을 펴내면서 무허가 도서등록번호를 사용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전기봉 구타를 포함한 고문을 당했으며, 2007년 11월에 열린 재판 이전에 이미 구금되었다. 2009년 7월 이래 그의 변호사와 누나는 그에 대한 면회를 불허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0년 초 교도소에서 베이징에 있는 변호사에게 팩스를 보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면회를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상하이 인권변호사인 정엔충(Zheng Enchong, 鄭恩寵)은 토지에서 쫓겨난 주민들이 지역의 전 토호인 저우정이 (Zhou Zhengyi, 周正毅)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가 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그의 혐의는 조작된 '국가기밀 누설죄'로 외국 기관에 '내부의 보고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6월 출소한 후에도 그는 경찰서에 70여 회 불려가 심문을 받았고, 지금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끔 교회에 가는 것만 허용된다.

2011년 2월 중순 이후 다수의 변호사가 사라졌다. 그 중 몇 명은 얼마 뒤 석방되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실종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이 올 1월 이후 튀니지, 이집트 및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성공한 뒤, 중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자스민 혁명'을 위해 모이는 온라인 호소에 중국 정부가 과민 반응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중국에서의 행동을 촉구한 익명의 온라인 호소란 것은, 사람들에게 2011년 2월 20일을 시작으로 매 일요일 오후마다 거리를 '걸으면서 웃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5월 4일) 실종된 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2011년 4월 29일에 체포된 베이징 인권변호사 리광평(李方平) (그는 2011년 5월 4일 풀려났다; 베이징 인권변호사 리 씨용병 黎雄兵는 2011년 5월 4일 체포되었다가 2011년 5월 6일 풀려났다), 광저우 '자스민 집회'에 참석하려 나가다 고문을 당하여 다리에 중상을 입고 2월 25일에 실종된 광저우 변호사 류시후이(Liu Shihui 劉士輝), 2011년 2월 19일에 실종된 상하이 변호사 리 티안티안(Li Tiantian) 등이다.

실종되었다 풀려난 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2011년 2월 19일에 5월 5일 석방되어 고향인 중국 북동부 지린성으로 끌려간 베이징 인권 변호사 탕 지티안(Tang Jitian 唐吉田). 탕은 억류된 기간 중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011년 2월 19일 끌려갔다가 4월 19일에 석방된 베이징 인권변호사 장 티안용(Jiang Tianyong 江天勇), 중국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가르치는 전직 인권변호사로 2011년 2월 19 끌려갔다가 4월 29일에 석방된 텡 비아오(Teng Biao 滕彪), 2011년 2월 25일 끌려갔다가 3월 4일에 석방된 광저우 변호사 우전치(Wu Zhenqi 吳鎮琦), 2011년 3월 25일에 끌려갔다가 4월 28일에 석방된 광저우 변호사 류정칭(Liu Zhengqing 劉正清), 2011년 4월 8일에 끌려갔다가 4월 19일에 석방되어 후베이성의 고향으로 강제로 보내진 베이징 변호사 진광홍(Jin Guanghong 金光鴻), 억류된 유명한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艾未未)의 가까운 친구로서 2011년 4월 14일에 끌려갔다가 4월 19일 석방된

베이징 인권변호사 류시아오유안(Liu Xiaoyuan 劉曉原).

베이징의 인권변호사 니 유란(Ni Yulan 倪玉蘭)은 몇 년전 자신의 집이 철거되는 것을 막으려다 구금도중 경찰의 구타로 불구가 되었는데, 2011년 4월 6일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다시 구금되었다. 광저우 인권변호사 탕징링(Tang Jingling 唐荊陵)도 2011년 2월 22일에 끌려갔다. 3월 1일 공안은 탕의 가족에게 그가 광저우시 판유 지역의 '다쉬교육센터(Dashi Training Centre)' 내 연금상태에 있다고 통보하였다.

중국 당국은 이들 변호사의 구금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관리는 외국 언론인이 이들 변호사와 구금된 인권운동가 사건에 대하여 묻자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중국 당국은 이들 사건 처리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형사 절차에 대한 관련 법규가 얼마나 준수되었는지, 해당 사건을 맡은 관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그리고 구금된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탄압과 함께, 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인권보호 활동 때문에 자격을 정지당했다. 2010년 4월 베이징 법무국(Beijing Justice Bureau)은 2009년에 있었던 중국 남서부 스촨성 루저우(Luzhou 瀘州)시의 파룬궁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 도중 '법정 질서를 문란케 한' 이유로 베이징 인권변호사인 탕지티안(唐吉田)과 류웨이(劉巍)의 변호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취소하였다. 이들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자신들은 법정에서 변론 시도를 판사가 계속 방해하여 항의 표시로 퇴정했을 뿐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 인권변호사(웬하이보, 장티안용, 리수빈, 통차오핑, 양후이웬, 텡비아오 장지앙강, 탕징링 溫海波, 江天勇, 李蘇濱, 童朝平, 楊慧文, 滕彪, 張鑒康, 唐荊陵 등)는 베이징 법무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연례 평가를 승인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인권보호 활동이나 파룬궁 신도나 유명 인권운동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호사와 법률 활동가의 사례를 볼 때, 우리는 중국 정부가 빈번히 자국이 '법치' 국가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왜 중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노력할 뿐인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는 항상 반체제 인사 탄압의 대상이 된다. 2007년 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변호사

법 같은 일부 법규가 개선되긴 하였지만, 변호사 보호에 대한 규정은 한번도 적절하게 집행된 적이 없다. 형사사건 변호사는 아직도 중국 형법 제306조에 따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법의 가장 유명한 최근의 희생자는 베이징 변호사인 리 주앙(Li Zhuang 李莊)으로, 그는 2010년 1월 중국 남서부 충칭시 법원에 의하여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리는 당초 마피아 두목 혐의자를 변호하였다. 의뢰인이 구금 도중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여, 그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위의 사례들은 형사 변호, 특히 중국 당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중국이 어떻게 자신들이 '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상 중국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중국이 기껏해야 법을 이용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지, 많은 법규가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되어 왔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 테러대응과 인권

비블루 로이통밤 (인권긴급행동, 인도)

개요

테러리즘과 반테러리즘에 관한 담론에서 2001년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9.11 테러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인도 정부도 그들식으로 규정한 ‘테러리스트’들을 탄압하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충분히 활용했다. 하지만 인도 동북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크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날씨는 9.11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세기 전 같은 날인 1958년 9월 11일 인도 대통령은 엄벌위주의로 악명 높은 군특별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¹을 승인하였다.

이 발표문에서 인권에 미친 새롭고 확연히 드러나는 미국 9.11테러의 영향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인도의 1958년 9.11의 영향 모두를 논의하고자 한다.

오래된 9.11

군특별권한법에 의해 ‘치안불안지역’이라 선포되는 지역 내에서는 연방연합군에게² 특수한 권한이 주어져 영장 없이도 구내에 들어가 수색하고³, 의심되는 건물을 파괴하고⁴,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⁵ 구금하고 심문하여 ‘작전정보’를 받아내며⁶ 미미한 혐의가 보여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⁷ 할 수 있다. 연방정부⁸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군부대나 군인의 이러한 소행에 대해 기소하거나 법정 대응을 할 수도 없다.

1950년대 나가스(Nagas)의 민족자결권 쟁취를 위한 노력이 폭력화되자, 나가스 힐스(Nagas Hills)는 ‘치안불안’으로 선포되었고 1960년대 미조스(Mizos)가 비슷한 절차를

뻘으면서 ‘치안불안’은 루샤이 힐스(Lushai Hills)로 확대되었다. 1972년 동북지역 행정구역이 다시 정리되면서 군특별권한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이 아삼(Assam)지역을 돌아 트리푸라(Tripura) 주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치안불안’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연방의 자치단체장/행정부에게 국한되었던 것이 연방정부로 확대되었다. 점차적으로 동북지역의 7개 자매 주 모두가 ‘치안불안’으로 선포되었다. 1990년 잠무(Jammu)와 카쉬미르(Kashimir)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1966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아이즈왈(Aizwal) 지역은 폭격을 당했다. 강제적 ‘실종’, 사법절차를 무시한 처형, 강간, 고문, 구금 등이 널리 행해지면서 안타깝게도 정기적으로 문서화되고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극악 행동들이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가 당연시되고 있다⁹.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른 인도의 세번째 정례보고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 (1997년 8월 4일자, 유엔문서 번호 CCPR/C/79/Add.81)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인도 일부 지역이 군특별권한법에 의해 장기간 ‘치안불안지역’ 선포의 대상이 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고 규약 4조 3항에¹⁰ 위배되도록 국가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비상권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였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4조 3항을 행사한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1) 훼손한 규정들, 2) 시행한 사유 3) 종료된 날을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군특별권한법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준군사조직¹¹와 반군세력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보안당국에 의해 가해지는 생존권(6조), 고문 받지 않을 권리 (7조), 개인 자유와 안전의 권리 (9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4조) 등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6조와 7조에 명시된 권리는 국가비상사태시¹²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인권들이다.

위원회는 인도정부가 민중의 자결권(1조), 표현의 자유(19조), 참정권(25조)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테러리즘과 반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문제는 특별히 세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도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어서 한다는 인도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의 의견을 지지하였고, 국제규약¹³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테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명한 의견이지만 인도정부에는 잘 통하는 것 같지 않다. 인도 대법원은 군특별권한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을 신속히 처리해버리고 이 법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악명 높은 판결'¹⁴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은 군특별권한법이 국제규약¹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유엔위원회의 특별 권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조항도 당당히 무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인도인권위원회는 군특별권한법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회피하였다.

2004년 인도 군세력이 마니푸르(Manipur)의 한 처녀인 탄잠 마노라마(Thanjam Manorama)를 감금, 강간, 살해하면서 시민들은 전례 없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인도 국무총리는 마니푸르 주민들에게 '군특별권한법'을 '좀 더 인간적인 법으로' 대체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연방 정부는 정년퇴임한 대법원 판사 B.P. 지반 레디(Jeevan Reddy)를 '1958 군특별권한법 검토위원회'(Committee to Review the 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1958)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뒤 '군특별권한법은 어떤 이유에서든 억압의 상징이 되었고 증오의 대상이고 차별과 횡포의 도구였으므로, 이 법안을 전면 폐지'¹⁶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6월 6일 정부에 제출되었으나 정부는 보고서가 권고하는 사항을 시행에 옮기는 대신 보고서 자체를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한 힌두 일간지 덕분에 이 보고서는 유출되어 인터넷에 게재되었다.

인종차별금지 국제규약에 따라 인도정부의 14차-19차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마친 후 인종차별금지위원회(Racial Discrimination Committee)는 군특별권한법의 인종차별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인도 정부에 검토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1년 안에 군특별권한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도정부는 권고사항을 듣지 않았고 여러 번에 걸쳐 인종차별금지위원회가 보낸 독촉장에도 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나바네덤 필라이 (Navanethem Pillay)도 2009년 3월 인도를 단독 방문하는 동안 군특별권한법을 '오래된 식민지 잔해'라 부르며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이롬 샤르밀라 차누 (Ms. Irom Sharmila Chanu)는 오로지 군

특별권한법 철폐 한 가지를 요구하면서 11년째 단식투쟁중이다. 그녀는 중대보안사범으로 취급 받고 있으며 인도 동북쪽과 카쉬미르의 '치안불안지역'은 계속해서 군특별권한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새로운 9.11

인도 정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에 대한 첫 반응으로 2002년 국회와 공동으로 테러방지법을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OTA) 제정하였다.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외에도 2001년 12월 발생한 뉴델리 의회 공격도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다음 해 테러방지법은 광범위하게 남용된다는 이유로, 특히 소수민족을 목표로 억압하기 위해 남용된다는 이유로 강력한 비난을 받았고,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인권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기 다른 분야의 집중적인 로비로 테러방지법은 2004년 국회에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1967년 제정된 '불법행위방지법'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UAPA) 개정을 통해 수많은 엄벌위주 조항들이 생겨났다.

11월 26일 발생한 뭄바이 테러공격은 맹목적 애국주의와 힘의 과시를 낳았고, '테러에 강력 대응' 하는 것은 보다 완고하고 거친 법률의 입법과 등치되었다. 2008년 12월 국회의 실질적인 토론과 심사 없이 이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불법행위방지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엄벌위주 조항들이 도입되었는데 이 때 개정된 법이 현재 인도의 국가 반테러법이다. 법 개정은 미국이 연방수사국 (FBI)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인도 수사국¹⁷(National Investigation Agency)을 설립하여 인도의 주권, 안보,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도헌법상 수사는 기본적으로 주 관할 사항이고 연방형사범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의하면 연방 내무부 장관 치담바람 (Chidambaram)이 '인도 수사국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헌법의 경계를 거의 넘어섰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사항은¹⁸ 다음과 같다.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테러행위'의 정의
- 불분명하고 엄격한 '테러리스트' 개념과 그 단체 구성요소와 '테러단체 구성원'의 정의
- 테러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용의자의 최소 구금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최대 구금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기준으로도 국제 기준을 훨씬 넘는다.

-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승인되지 않은 절차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보석 거부
- 일부 경우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게 한 조항
-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근거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별법정을 두어 일반인 비공개로 심리법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수사국에 권한을 부여한 새 법령

인도에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법들이 있다. 츠하스티스가르흐 공공보안법 (Chhasttisgarh Public Security Act), 마하라스트라 계획범죄법 (Maharashtra Organized Crime Act), 잠무와 카쉬미르 공공보안법 (Public Security Act of Jammu and Kashmir), 펀잡 주 보안법 (Punjab Security of State Act), 아삼 치안불안지역법 (Disturbed Area Act of Assam) 등이 그것으로 오늘날 인도의 테러대응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비나약 센 (Binayak Sen) 이 사실상 불법행위 방지법과 츠하스티스가르흐 공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지도적인 시민권 변호사가 언급했듯이¹⁹ 테러억제와 무관하게 부패한 경찰에 의해 집단적으로 엄벌위주 악법이 적용되면서 문제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오래되고 새로운 9.11: 마니푸르의 경우

2008 ‘불법행위방지법’은 ‘테러행위’²⁰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위법이 되는 행위(actus reus)는 ‘폭탄, 다이내마이트, 다른 폭발물질, 총기류 사용을 포함한다. 또는 **본질에 관계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으로 명시하고 있다. 범죄의 요건(mens rea)은 인도의 통합, 보전, 안보 혹은 주권을 위협하려는 의도나 위협할 가능성, 또는 인도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충족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률 상으로는 어떤 마니푸르(Manipur) 주민도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 마니푸르는 1947년 헌법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출하였지만 1949년 인도 자치령으로 흡수되어 마니푸르가 ‘인도’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많은 치명적인 테러집단이 존재하는 곳이 마니푸르 계곡이다. 왜냐하면, 인구 백만에 ‘불법행위방지법’ 상 리스트에 등재된 테러 단체가 여섯개 존재하며 군특별권한법에 의해 군부가 마니푸르에 반

세기 이상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1. 2011년 4월 2일에서 3일까지 열린 세계 크리켓 월드컵에서 인도는 우승을 차지했고 마니푸르에 주둔하고 있는 8만 인도무장군대는 이에 고무되어 30분간 여러 번에 걸쳐 총을 발사하였다. 군부대에서 8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논강크홍(Nongangkong) 마을에 사는 75세 와이크홈 마니 (Waikhom Mani) 할머니는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군이 발사한 총알에 맞아 즉사하였다.⁽²¹⁾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는 아무것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2. 2011년 4월 20일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임팔 도시 (Imphal City) 중심에 구와하이트 (Guwahait) 고등법원의 T. 난다쿠마르 (Nandakumar) 판사 차량이 무장군대 차량을 추월하였다. 이를 발견한 28 아삼 소총부대 모모 사팜(Momo Sapam) 대령은 판사 차량의 수행원을 발견하고는 뒤쫓아가 법원건물 바로 앞에서 그를 위협하였다.⁽²²⁾ 법조계는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항의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았다.
3. 2010년 8월 18일 교사이자 7살과 4살 두 아이의 어머니인 모이랑뎀 론드호니 데비(Moirangthem Londhoni Devi)는 남편을 만나러 구와하티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날 저녁 부부는 마니푸르의 민족해방전선(United National Liberation Front, UNLF) 활동 가담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0년 9월 6일 증거불충분으로 임팔 도시 서부지부 일급 치안판사(Judicial Magistrate 1st Class Imphal West)에 의해 보석을 승인 받았지만 그녀는 아직도 구와하티의 인도수사국(NIA)에 억류되어 있다. 인도수사국 불법행위방지법 중 기소 전 180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악질조항을 이용하였다. 판사가 해야 했던 단 한 가지는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²³ 확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구금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원은 기소혐의가 사실인 것 같다²⁴는 이유로 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방지법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테러집단의 일원이라는 모호한 기소로 10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그녀는 2011년 3월 8일 구와하티 중앙 형무소 안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여성단체는 그녀와 연대하여 부당함에 항의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여 2011년 4월 28일 단식투쟁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부를 움직이지 못했다. 군특별권한법과 불법행위방지법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1967)은 2008년 개정되었지만 수천의 여성, 아이들, 남성들이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고통을 참고 있는 인도에서 무법의 법

으로 존속하고 있다.

미주

1. 인도국회는 일부 군경이 저항하는 가운데 1958년 5월 22일 군특별권한법을 통과시키고 인도는 대통령은 1958년 9월 11일 이 법안을 승인하였다.
2. 공군과 의회병력
3. 1958 군특별권한법 4항 d
4. 1958 군특별권한법 4항 b
5. 1958 군특별권한법 4항 c
6. 2001년 8월 대법원 명령
7. 1958 군특별권한법 4항 a
8. 1958 군특별권한법 6조
9. 인도 살인의 길을 가다: 군특별권한법 50년과 인권감시, 2008년 8월
10. 유엔문서 CCPR/C/79/Add.81 19번째 단락
11. 유엔문서 CCPR/C/79/Add.81 18번째 단락
1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4조 2항
13. 유엔문서 CCPR/C/79/Add.81 18번째 단락
14. 군특별권한법: 긴급성 검토. 저자: A.G. 누라니 <http://www.scribd.com/doc/19089510/Armed-Forces-Special-Powers-Act-1958> on 5 May 2011
15. 유엔문서 CCPR/C/79/Add.81 18번째 단락
16. 인도정부 가정부처 1958년, 2005년 군특별권한법 검토위원회 보고서 4차, 권고사항, 단락 5(a), 75페이지. 전문참조 <http://www.hindu.com/nic/afa/>
17. 치담바람 '인도조사국은 위헌' - 위키리크스
http://rtn.asia/171_chidambaram-felt-nia-was-unconstitutional-wikileaks
18. <http://www.amnesty.org/en/for-media/press-releases/india-new-anti-terror-laws-would-violate-international-human-rights-standards>
19. 산티 부산, 테러리즘: 강력 법안이 해답일까? <http://www.thehindu.com/todays-paper/tp-opinion/article365554.ece>
20. 2008 군특별권한법 15항
21. 임팔 자유 언론, 임팔, 2011년 4월 4일, 페이지 1
22. 산가이 특급, 임팔, 2011년 4월 22일, 페이지 1-4

23. 43항 D (2) (b)

24. 43항 D (5)

대테러 정책과 조치의 경험: 싱가포르 국가보고서

시나판 사미도라이 (싱크센터, 싱가포르)

1. 배경

테러리즘에 대한 유엔의 정의

유엔은 비행기 납치, 외교적 인질 사건, 폭파, 테러자금지원 등의 테러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1963~1999년 사이에 12개의 국제협약을 만들었다. 12개 협약의 對테러 핵심 조항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유엔의 '포괄적 對테러 국제 협약(안)'은 테러리즘의 정의와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된 어려움은 테러조직과 해방운동의 구분, 그리고 테러 행위로 인식되는 군대의 활동과 관련된다. 협약안 제18조는 협약의 범위, 특히 군대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역 또는 내부 무장갈등 기간 동안 행해진 특정 행위가 국제인도법은 금지하지 않더라도 협약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국제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가령, 내부의 무장갈등을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력사용의 기본 원칙만 지키면 정부군이나 소유물에 대한 무장반군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국내법으로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반군이 당국에 체포되면 폭력행위로 보통 형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싱가포르의 법적 정의란 일체의 테러 행위를 하거나 또는 테러 행위를 시도하는 자, 테러행위에 가담하거나 돕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테러 행위'란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대테러 법규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과 날조된 위협을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처벌한다.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 2001년 법무장관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373호 이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2년 7월 8일 정부가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테러 행위와 연관 가능

성이 있는 소유물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금 지원은 은행 대출, 여행자수표, 은행 수표, 우편환, 주식, 증권, 채권, 환어음, 신용장 등을 말한다. 이 법률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373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험:

싱가포르가 경험한 테러 행위는 거의 없다. 1960년대 싱가포르 독립투쟁은 공산주의자 반란에 대한 폭력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독립 후에는 3건의 테러공격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다.

2. 테러 대응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대테러 조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새로운 대테러 조치와의 직접적 연계와 그것들이 아시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문제가 테러위협으로 바뀌고,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행정적 구금: 피구금자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의 유린

싱가פור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 ISA)에 따라 행정적 구금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ISA를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자, 비판가, 시민운동가를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과거 싱가포르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ISA하에 사람들을 구금한 반면, 지금은 호전적 이슬람 운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 없이 구금하고 있다.

행정적 구금은 어떤 형태의 구금보다도 공인된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행정적 구금은 일체의 반대 세력을 장기적으로 탄압하고,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며 정치적 야당을 제거하는 수단이 되었다. ISA나 국가전복방지법 등 국내법에 따를 경우 구금은 여전히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행정적 구금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우회하고 행정적 재량에 따라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여 국제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행정적 구금 관행은 포로의 처우에 관한 국제법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일반적 법률 시스템이 보장하는 법적 보호 없이 행정적 구금과 심문을 허용하고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는 용의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 정보기관에 의한 도청과 수색을 허용한다. 이러한 법률 시스템은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의 상시적 시행을 필요로 한다. 혐의 입증을 위하여 의도나 증거를 확인하는 재판도 필요 없고, 단순히 혐의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3. 과정: 대테러 법률 및 정책의 남용과 시민사회 활동

a) 대테러 조치와 정책의 문제점

대테러 조치는 군사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 존중과 법치, 민주주의를 무시한다. 9/11 테러 이전에 미국과 호주 등은 국가보안법(NSL)에 따라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부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며, 이러한 가혹한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도 유사한 보안법을 시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후퇴하고 있다. 9/11 테러는 각국 정부가 자의적 체포와 가혹한 법률의 시행을 정당화할 기회를 주었다.

대테러 조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생활 부분으로,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단순한 혐의를 근거로 경찰이 비밀리에 인터넷, 휴대폰 등의 통신수단을 도청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테러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합법적이고 사적인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

9.11 이후 정부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통제에 인터넷을 포함시켰다. 이 조치로 이메일과 인터넷 검색에 관한 전반적 통계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통신사를 경찰의 “잠재적 오른팔”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국내보안부와 부패조사처를 포

합한 법 집행 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미성년자의 통화 내용과 인터넷 사용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행이 1997년에 있었다는 확증은 없지만, 당국이 일부 야당 정치인과 비판적인 인사를 일상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9.11 이후 대테러 조치의 관점에서 테러리즘 문제 재해석하기

정부는 대테러 활동의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이 '대테러 활동'의 국제화는 인권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제약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덕분에 각국 정부는 인권운동가, 소수자, 자기결정권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음으로써, 정부는 사회갈등이나 종족 분쟁 해결에 군사력을 동원할 선택권을 갖는다.

b) 대테러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도전과 성과

- 국내보안법(ISA) 철폐 운동
- 차별 철폐 운동
-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운동

c) 관련 사례

9.11이후 커다란 제약에 직면한 시민사회

9.11 이후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적법한 사생활을 경찰이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면서 시민사회는 더욱 타격을 받았다. 경찰은 전화, 이메일 및 기타 통신수단을 감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ISA로 NGO를 위협하면서 이들의 표현과 의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인권단체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더욱이 차별과 빈곤이라는 장기적 문제는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하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지를 놓고 시민사회 내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4. 부정적 효과

싱가포르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ISA를 이용한다. 9/11이전에는 이 법의 점진적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연기되었다. 이것은 시민의 자유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후퇴이다.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의 정의를 폭넓게 적용하면, 반대에 대한 탄압, 시민 활동에 대한 전반적 감시와 신상 파악 등이 더 폭넓게 허용된다. 싱가포르의 대테러 법률을 강화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과 거짓 위협의 확산을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스마트카드, 공인인증카드와 여권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및 인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차별사례 증가: ISA의 제마 이슬라미아의 회원 구금과 더불어 차별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일자 싱가포르 NTUC는 고용주가 말레이-무슬림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차별방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5. 권고사항

대테러 조치 관련 지침에 인권체계 도입

대테러 조치는 인권 체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아시아 각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것은 인권 및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만인의 인권, 평등, 자유, 삶에 영향을 주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 대한 참여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한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가 없는 테러와의 전쟁은 구체적 해결책 없이 계속될 것이다. 테러리즘의 정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가와 무장세력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협박과 무차별적 폭력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9.11 이후, 평화적 전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계화, 자본주의 및 자유무역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테러 가담자로 의심받는 적대적 환경을 실감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표현과 언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가령, 경제적 불평등, 세계화나 연료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비폭력 대중집회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9/11이후 도청, 감시, 경찰의 폭력과 함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시민의 자유 침해와 함께,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의 권리, 노동권, 난민을 보호할 재정적 수단도 줄어들었다.

시민단체의 과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폭력 및 근본주의의 문제와 연계하는 한편 정의, 평등 및 민주주의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도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사실 각국 정부는 극단주의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부정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과제는 대테러 조치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어떻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기타 독립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안법과 관련 정책이 해당 지역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도록 할 것인가?

테러와의 전쟁과 한반도

이태호 (참여연대, 한국)

1. 들어가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탈냉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그 10년 뒤인 2001년, 냉전을 대체한 새로운 시대가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드러내는 듯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9.11사건과 미국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 그리고 아프간 공격이 그것이다.

한반도의 분단된 반쪽인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할 당시 사회주의권 붕괴의 충격과 이어진 1990년대 말의 식량난으로부터 겨우 벗어나와 2000년 북미 코뮤니케, 2002년 북일정상회담 등 미국 일본 등 냉전시대 적대국과의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약속한 상태였다.

한편, 한반도 분단체제의 다른 한쪽인 남한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이래 1998년 최초로 민주화 운동 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반부패, 인권, 복지에서 중요한 개혁¹⁾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해 '햇볕 정책'으로 알려진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하였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 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한반도 남단에는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스스로 이룬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반세기 이상 이어져온 한미군사동맹이 불균등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적

1) 다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여기고 힘 있는 미국과의 군사외교경제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는 대한민국이 그것이다.

2. 테러와의 전쟁과 한반도 평화

부시 독트린과 한반도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임 미 대통령은 북미코뮤니케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남한 정부가 추진하던 햇볕정책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듬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은 3대 악의 축의 하나로 공포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F-15전투기의 구매와 MD 참여,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받고 있었다.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는 일순간에 전쟁가능성으로 전환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F-15전투기 40대(40억달러 규모)를 구매했다. 또한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직후 아프간에 4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하여 '대테러전쟁' 참전국가가 되었다. 영국이 공식 참전하기까지 한국은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한 나라였다. 다만,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MD참여도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테러전쟁 참전

2002년 12월 남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기간 중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간 파병에 이은 이라크 파병, 북한제재 공조,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및 MD 참여, 그리고 한미군사동맹의 지역/지구적 범위에서의 역할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 핵 문제 해법을 제외한 대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에 응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1,2차 파병에 협조하여 1차 약 500명(2003), 2차 약 3000명(2004-2007, 1차 병력 포함 3500명 내외)의 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했다. 또한 주

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주한미군기지를 전세계 분쟁지역을 향한 허브 기지로 활용하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PSI에는 참관자격으로, MD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으로만 참가했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선택한 선제(핵)공격 옵션을 이라크 파병의 대가로 포기하는 것을 거부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 옵션을 포기한 것은 이라크에서의 저항으로 전황이 불리해지고, 미국 국내에서 비판세력이 다수화된 2005-6년 이후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2011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군 대한반도 군사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요구해오던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6자회담과 북한의 핵실험

"약행에 보상은 없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에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부시 행정부는 2003년 4월의 북미중 3자 대화를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 6자회담은 북미 양자대화 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포함된 6자 대화가 병행되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6자는 2005년 4차 6자회담의 결과로 9.19공동성명을 채택한다. 그 골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또는 재래식 공격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5자는 북에 대해 에너지를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원전(경수로)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6자회담 내에 별도의 포럼을 설치하여 관련 당사국간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6자는 이 합의사항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해가기로 했다.

그러나 9.19 성명 직후 미국의 재무부가 예고 없이 대북금융제재-BDA 북한자금 동결(2005. 9)-조치를 취했다.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조치를 미국 내 모든 은행들에게 통보하면서 "북한이 불법자금을 조성하여 이 은행의 계좌를 통해 세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DA는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 BDA에 의해 동결된 40개 계좌에는 약 2천4백만 달러가량의 김정일 비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결과 북미관계가 다시 악화되

었다. 이 제재조치로 인해 9.19성명 이행은 교착되었고, 이에 대해 2006년 북한은 핵 실험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간, 북미간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한계 또한 드러내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6자는 2007년 2월 13일 우여곡절 끝에 9.19성명의 초기 이행방안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3일 2단계 이행방안에도 합의하였다. 더욱이 10.4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모든 조건이 호전되는 듯 했다.

이명박-오바마 정부의 한미동맹과 동북아시아 신냉전

2007년 12월 치러진 남한 대선에서 보수 정치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다. 그는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취했던 태도를 답습했다. 남한이 군사적 외교적 힘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한반도에 분단극복과정을 정의롭게 관리하는 최선이 길이라는 네오콘식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했고, 북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화협력이 병행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2008년 9월 남한의 국정원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남북, 북미관계는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았다.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북한은 2009년 4월 위성발사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고 제재가 강화되자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아직까지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와 테러와의 전쟁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아랍세계와 이란, 쿠바 등에 대해 관계개선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초기부터 2005년의 BDA(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미 재무부의 대북금융제재가 북을 고통스럽게 하여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인사들을 중용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실험을 강행한 이래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한층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부와의 대북제재공조도 더욱 강화되어왔다.

2010년 3월 서해 NLL 인근에서 남한 대잠수함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원인제공자로 지목한 이후 남북관계는 모든 면에서 단절되었

다. 같은 해 11월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남한 해병부대를 겨냥한 북한의 포사격으로 민간인 2명을 포함한 4명이 사망한 직후 갈등은 절정을 이루었다. 이들 사건 이후, 한미군사동맹은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동원한 서해상의 무력시위, 서해분쟁 재발 시 남한군의 대규모 보복공격을 보장하는 '적극적 억지전략' 개발 등 공격적 성격을 더해가고 있다. 남한은 PSI와 MD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미군사동맹은 또한 국제 금융위기 이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도록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남한의 민주화 과정에서 구제도,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 12월, 국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3대 입법' 통과 여부였다.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입법안 중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안은 200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테러와의 전쟁과 한국군의 아프간 이라크 파병 이후 반테러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축소되어오던 국정원의 역할도 다시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의 무산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 그 모태가 된 악법이다. 조문의 모호성과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가 안보보다는 주로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다시피 했지만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 공작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1991년 남북간 불가침과 상호존중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채택한 6.15선언과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거치면서 남과 북이 적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소한의 존립 이유도 사라지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9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지가 무산되었다. 당시 의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도 이 법의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지 않았고, 폐지여론도 압도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의회 내에서 개/폐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9.11 직후인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가 가결한 이래, 테러방지기본법, 테러자금조달금지를위한법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 테러방지를 빙자한 각종 통제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통합방위법은 1997년 제정된 뒤 9.11직후인 2001년 12월 대폭 개정되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통합방위법의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테러방지법안은 9.11 테러 직후의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성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며,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테러행위 발생 시 군이 치안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정원장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도청 및 감청을 할 수 있고,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

원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는 등 법안의 각 조항들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며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고,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며, 3)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나며 특히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정보수집 이외의 수사권한, 군동원요청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제정에 반대했다. 한편,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이 법무부에 입국불허를 요청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한국의 테러방지법이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간주한 시민사회의 저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의견 등으로 국회심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여러차례의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2011.5)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01년 대테러전쟁이 선포될 무렵, 남한은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원화와 외화거래를 추적하고, 범죄수익과 관련된 금융거래나 돈세탁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그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주요 법제를 갖추고 있었다. 사실 이 제도들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부유층의 재산해외도피,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단체들이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였다.

정부는 2004년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데 이어, 이 협약의 이행법안이라며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2007년 초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테러관련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 이들의 금융거래가 허가제로 전환(불허)되고, △특정한 범죄수익 거래 혹은 일정액이상의 혐의거래를 모니터하는 부서인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vestigation Unit)의 장이 "테러혐의금융거래 및 테러혐의금융거래자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들의 자금을 동결"하며 △이 자금의

조성과 세탁에 관련된 자에게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테러’ 개념의 자의성에 의해 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테러자금’을 정의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 ‘테러를 위한 자금’ 조성행위 뿐만 아니라 ‘테러관련 자금’ 조성행위, 나아가 그 미수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단지 우방국의 요청만으로도 개인이나 단체를 테러관련자로 지정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하도록 한 관련조항이 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범죄혐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기구에 불쾌한 재정부 산하 FIU가 테러혐의거래자를 결정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들의 금융거래를 동결하도록 한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정부의 원안은 폐기되고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수정하고, 테러 혹은 테러자금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법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한국정부가 서명한 국제협약상 특정 범죄들을 나열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규제를 법원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고, 테러관련 자금조달 혹은 테러관련 자금조달의 미수행위 등의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테러관련자를 지정함에 있어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유엔이나 국제협약에서 테러관련자로 특정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테러관련 금융거래를 동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외국환 관리법의 선례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었다.

외국환 관리법과 이란 제재

외국환 관리법은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우방국(미국)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한 이란제재의 경우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 국영은행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 및 개인 1명만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

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패킷감청의 남용,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

2009년 8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에서 약 10년 이상 패킷감청수단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패킷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실상 ‘포괄 백지 허가서’를 발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2011년 3월 참여연대 민변 등은 패킷감청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이를 금지하는 입법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감청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탑재를 의무화하고, 개인휴대 단말기(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해 반경 5m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화기록나 위치정보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일체를 보관하여 수사정보기관에 협조하도록 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감청의 일상화’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비밀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다른 개혁적인 야당 개정안들과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정원법 개악 시도

국가정보원은 1961년 군부쿠데타 이후 미국의 CIA를 모방한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중앙정보부(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는 대북 정보수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 외에도 정부부서 보안점검, 국내정치 관련 정보 수집 등의 광범위한 비밀권한에 힘입어 정권안보도구로 악용되어왔다.

이에 민주화 직후인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 법 개정을 통해 정치관여를 엄격히 금지했고, 그 직무를 “국외정보 및 대공·방첩·대테러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내란 및 국가보안법 등 사범 수사, 국정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

사"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사건을 통해 1990년대말과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구 안기부와 국정원이 직무범위 이외의 사안에 대한 불법도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욱 심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한 국정원의 대통령에 대한 정례보고 부활,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반대 교수모임 사찰,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관여,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국정원 고위간부의 언론대책회의 참석, 종교대책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에게 후원한 내역자료 요구 등 법이 정한 직무범위에서 명백히 일탈한 정치적 개입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여당은 2008년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업무' 등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테러방지기본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더해지면 국정원은 국내외 대부분의 정보수집 권한과 합법적인 패킷 감청 권한을 보유하고, 치안 및 군사행동 집행기능까지 포괄한 거대한 비밀권부로 부활할 수 있다.

이슬람계 이주노동자와 반한외국인에 대한 사찰과 차별

테러와의 전쟁은 이주노동자들, 특히 이슬람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라크 추가 파병 전후인 2004년 법무부는 '대테러종합대책'에 따라 이란, 이라크 등 8개 테러지원국가 국민이 입국할 경우 경찰 등에 이들의 체류지, 기간 등을 통보하고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슬람권 출신자의 동향파악 활동을 하도록 했다. 당시 국내 거주 이슬람국가 출신자는 29개국 6만706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이 1755명, 알 카에다 등 테러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7177명이 집중 사찰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하거나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자 ▲정치적 주

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하고 오도하며 이를 선전하거나 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반한활동 인사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출입국관리법, 집시법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한 뒤 강제퇴거시키고자 했다. 실제로 이해 10월 말, 법무부는 ‘반한 활동 관련자 등 단속실적’을 국회에 제출, 집회 등 가담 불법체류자 14명은 강제퇴거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는 등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골라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2~3주에 한 차례씩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을 확인하고, 이들이 체류 목적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지도 감시했다. 경찰과 검찰은 2010년 2월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또한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 의거하여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동조합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다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가 입국비자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공항에서 출국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각종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던 인사들이었다.